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6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6. 11. 15.(화) 14:1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6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1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6년도 제6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지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 다음 회의에서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5건,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의결사항

가. '17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건 (2016-64-232)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17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국회 아리랑법 공청회 때문에 국회에 참석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2017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17년도 공익채널 선정,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대상과 인정 조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2017년도 공익채널은 사회 복지 분야에 한국직업방송, 소상공인방송, 육아방송, 과학·문화 진흥 분야에 사이언스TV, 아리랑TV, 예술TV Arte, 교육 지원 분야에 EBS 플러스1, EBS 플러스2, EBS English를 선정하였습니다. 2017년도 장애인복지채널은 복지TV를 인정하고 심사위원회의 건의사항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인정조건은 화면해설방송 비율을 전년 대비 상향 조정하고 이를 이행할 것, 장애인복지채널 설립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의 기획·제작 확대가 필요하므로 관련 세부 이행계획을 ‘16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것, 장애아동 및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제작 확대가 필요하므로 관련 세부 이행계획을 ‘16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70조제3항,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의2에 따라 2017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대상과 인정 조건을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16년 9월 1일 「2017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을 의결하였고, 9월 30일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공익채널 12개, 장애인복지채널 1개 채널이 신청하였습니다.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2박 3일간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는 공익채널의 경우 심사결과 총점(1,000

점)의 65% 이상, 심사사항별 배점의 40% 이상 획득한 채널 중 공익성 방송분야별로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선정하여 사회 복지 분야에서는 한국직업방송, 소상공인방송, 육아방송 이 과학·문화 진흥 분야에서는 사이언스TV, 아리랑TV, 예술TV Arte가,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 지원 분야에서는 EBS 플러스1, EBS 플러스2, EBS English가 선정되었습니다. 심사위원회 건의사항은 현행 유효기간 1년은 안정적 사업기반을 구축하기에 부족하므로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고, 본방송 비율은 방송사업자의 재정적 여건과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는 지표이므로 배점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방통위의 공익채널 모니터링 결과, 방송매출액 대비 프로그램 제작비 비율,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결과,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 등을 계량화해서 심사 시 가점과 감점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공익채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채널이 진입할 수 있는 방안과 선정된 공익채널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유료방송 저가 상품 진입, 낮은 채널번호 부여 등 실질적 혜택 제공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채널의 경우 심사결과 총점의 70% 이상, 심사사항별 배점의 60% 이상 획득한 채널 중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로 인정하는데 복지TV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건의사항은 현행 유효기간은 안정적 사업기반을 구축하기에 부족하므로,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고, 화면해설방송의 최소요건을 현행 8.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화면해설방송의 비율을 전년 대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하며 자막, 수어, 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방송 제작에 그칠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채널 설립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의 기획·제작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 아동 및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제작 확대와 방송매출액 대비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비율을 계량화하여 심사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금일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2016년 11월 중 공익채널 선정서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서를 교부하고 2017년에는 매분기 이후 분기별 운영실적을 점검토록 하고, 2017년 2월 중 2018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 심사위원회를 운영해서 꼼꼼하게 심사해 주신 고삼석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하셨으니까 심사 과정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심사를 위해서 사무처 방송지원정책과와 심사위원들께서 2박 3일 동안 열심히 심사해서 오늘 이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지금 심사위원님들의 건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익채널 제도나 장애인복지채널을 지정하는 제도는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막고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특히 방송을 통한 장애인 복지 제고를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이고 이것이 일정 정도 성과를 가져왔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심사위원회 건의사항에 나와 있다시피 유효기간의 문제라든가 신규채널 진입의 문제, 프로그램 제작의 문제 그리고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에 대한 지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 1차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미래부하고 협의해서 이 제도를

를 개선해야 되는 그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심사위원회 건의사항을 참조해서 미래부와 협의할 사안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조치를 해야 할 사안들을 잘 점검해서..., 내년도 선정 기본계획을 내년 연초에 바로 또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심사 기본계획에서 위원님들께서 신규채널을 심사위원 전원이 합의할 경우는 선정할 수 있도록 해서 신규채널 진입의 가능성도 열어 주셨는데 심사해 본 결과, 방송사 운영능력이라든가 재원 마련 대책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준비 부족과 역량 미흡으로 인해서 심사위원들께서 지금 현재 선정되었다고 보고된 채널 외에는 추가로 신규채널을 선정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심사하느라고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감사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공익채널을 선정함에 있어서 신청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공익채널로 선정되면 혜택이 별로 없다는 것 때문인지, 아니면 경쟁력을 갖춘 그런 요건을 갖춘 채널이 그만큼 없다는 것인지, 둘 중 다입니까? 어떻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가 이번에는 심사위원회에서 공익채널로 선정해서 건의하실 경우에 추가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청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공익채널로 선정되고 나서 사실상 혜택이 의무송출되는, 그것도 아날로그 저가상품 같은 데서 송출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채널이든 간에 의무송출만 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사실상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심사위원회 건의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익채널로 선정될 경우에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만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건의사항으로만 써 놓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신청자가 적다 보니 매년 거의 같은 채널이 선정되고 있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 부분도 새로운 채널이 진입해서 다양한 경쟁이 이루어져야만, 선의의 경쟁을 이루어야만 프로그램 퀄리티도 높아지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의지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매년 같은 공익채널만 선정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쟁체제가 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결국은 혜택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익채널에 선정되면 이런 저런 혜택이 주어진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낮은 채널, 선호할 수 있는 채널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장벽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채널 배정은 미래부 소관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단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의 소관은 미래부인데 미래부에서도 채널번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매년 같은 채널만 선정되고 있는 이런 것을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히 교육채널 같은 경우는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봅니다. 많은 채널이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채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3개 채널을 매년 EBS가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EBS가 제대로 요건을 갖춘 방송사이기 때문에 다른 채널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만 혹시 또 새로운 진입장벽을 열어줄 수 있다면 1개라도 채널을 더 할 수 있다면 지금 4개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올해부터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심사위원님께서 동의하시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 부분들을 다른 민간 영역에다가 EBS뿐만 아니고 다른 채널에 잘 준비하면 공익채널로 진입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넓혀 줌으로써 많은 채널들이 참여해서 되도록이면 국민들에게 무료 보편적으로 그런 교육채널이 많이 확보되면 될수록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데 대해서 검토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채널은 1개만 신청한 것 같은데 이 1개 외에는 매년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장애인복지를 전문 편성 분야로 한 PP 자체가 장애인복지TV밖에 없습니다. 미래부에 등록된 데가 한 군데밖에 없고, 그래서 복지TV만 신청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단일사업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런 부분도 우리가 혹시 정책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희망복지방송만 계속 신청하고 거의 독점적으로 장애인방송 장애복지채널로 혼자만 독식한다면 역시 경쟁체제가 도입되지 않음으로써 프로그램 개발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유인책이 없는지, 수익성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장애인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에 그런 정책적인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지원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심사위원회 건의사항은 의결내용에 포함을 왜 시켰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가 향후에 공익채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안이라든가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석진 위원님이 특히 강조를 하셨는데 각각 건의사항이 다섯 가지씩 있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신 과장께서 보시기에 개인적으로 그중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상당 부분 타당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 이기주 상임위원

-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심사해 보면서 이번에 느낀 점은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공익채널들이 송출되는 것이 필요하다면 공익채널로 선정됐을 때 필요한 사실상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다양한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 사업자들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것은 브로드한 이야기이고 제가 건의사항과 관련해서 의견을 물은 것인데 어쨌든 이 공익 채널 선정,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제도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대안 중 일부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면서 생각한 것을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얼핏 보니까, 첫 번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찬반양론이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네 가지 사항은 각각 다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거나 아니면 법령을 개정해야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부의 소관이라든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것은 없어 보이는데, 아니면 신청한 방송사업자들의 재정적인 부담이 수반되는, 전부 이래서 실현하기가 힘든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향후 계획에 2018년도 선정 및 인정계획 수립하기 전에 여기에서 제시된 내지는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아니면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계획 속에 포함시킬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예산이나 법·제도 개선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해야 할 계획 속에 포함시켜서라도 정리해서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정리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심사위원회에서 동일한 사안이 이렇게 건의가 되거나 제시가 될 때에는 ‘그것은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추진이 불가능하다’ 내지는 ‘그것은 언제 우리가 추진하려고 반영하려고 계획 중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된 건의사항 외에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반복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무처에서 잘 검토해서 내년도 기본계획 만들기 전에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토론 내지는 리뷰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위원님들이 다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그다음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되는 채널의 신청이 많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기본계획을 의결할 때도 논의했던 것처럼 내년엔 심사와 관련된 기본계획은 내년 초에 이러한 심사위원회 건의사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논의되는 내용들을 다 포괄해서 검토하고 반영한 그런 계획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참고로 하나만 여쭙 보면 지금 공익채널 방송 분야별로 각 3개씩 선정되어 있는데 원래는 방송법에 의하면 이 중에 1개 이상만 의무전송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현황이 파악됐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9개 공익채널은 대부분 유료방송의 경우에 다들 전송하고 있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대부분 다 전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현황은 그렇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사회 복지, 과학·문화 진흥, 교육 지원 이런 공익채널로 선정될 경우에는 의무전송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둬므로 인해서 새로운 채널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저희가 제작비 지원에 나서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기본계획을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신 과장님이 너무 신중해서 이기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실무자로서 또 안을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그런 것으로 이해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심사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공익채널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서 접근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 지원 분야 3개 채널의 경우는 EBS가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그러면 이미 EBS에 대해서는 채널운용을 포함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제작이나 관련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TV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와 문화부에서 각각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YTN 사이언스TV도 정부 쪽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공공성이 상당히 강한 공익채널입니다. 그리고 사회 복지 분야에 있는 한국직업방송이나 소상공인방송 같은 경우도 공단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작 지원이 필요한 독립PP 성격의 공익채널들은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알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방통위나 공공기관, 정부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익채널에 대해서는 굳이

별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독립PP 성격의 공익채널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채널의 경우는 또 제가 이야기하면 플랫폼사업자들이 뺄 수 있으니까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부 공익채널들은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즉, 우리가 공익채널로 지정하든 지정하지 않든 이 채널에 대한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공익채널에서 졸업시키는 제도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신규채널이 진입하고 오히려 좋은 공익채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 짤 때까지 시간은 짧습니다만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좋은 의견들 종합해서 내년에 공익채널 제도, 장애인복지채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주)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6-64-233)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주)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은 조사결과와 위법성 판단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인터파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인터파크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고자 함입니다. 조사배경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해킹에 의한 지능형 지속가능 위협 공격방식의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됨에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경과입니다. 해킹으로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난 5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에 걸쳐서 발생하였고, 인터파크는 협박 이메일을 7월 4일부터 7월 22일까지 20여차례에 걸쳐서 수신하였고, 경찰청에는 7월 12일 수사 신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된 이후에 저희 방통위는 미래부와 합동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7월 25일부터 1, 2차에 걸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인터파크는 이용자 통지 및 방통위 신고를 7월 26일 하였습니다. 아래 쪽 조사결과가 되겠습니다. 유출 규모는 지난 5월 4일 기준으로 개인정보 총 2,540만건, 중복 제거할 경우 약 2,050만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아이디, 일방향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9개 항목이 되고,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출경로는 5쪽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만 이 사건의 해커는 지난 5월 3일 17시 15분경부터 5월 6일 새벽 2시경까지 원격제

어와 악성코드를 이용해서 내부망 PC 9대, 서버 2대 등을 차례로 점거한 후에 DB서버에 백업받아 저장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탈취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법성 판단과 제재방안과 관련해서 먼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통제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첫 번째로 최대 접속시간과 관련해서 5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개인정보처리자 PC를 켜둔 상태에서 업무망 및 DB계정 관리프로그램에 접속을 유지한 채로 방치를 하였고, 5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DB서버에 12시간 이상 접속한 횟수가 19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단하지 아니하는 등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망분리와 관련해서 내부 정책상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떨어지는 인터넷망 영역에서 업무망 영역을 가상화한 논리적 망분리 방식을 도입·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백업파일 관리와 관련해서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5월 4일경 백업받은 개인정보 DB 파일을 암호화하지 아니하고 이용자 DB 서버 내에 함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개인정보처리자 업무용 PC에 원격데스크톱 방식의 공유설정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직원들의 업무용 PC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계정 외에 별도로 동일한 공용계정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지난 5월 5일경 이 사건 해커가 개인정보처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DB서버에 6회, 웹서버에 9회 접속한 이력이 남아 있었고, 그다음에 서버접근제어 프로그램에는 이 사건 해커가 5월 5일경부터 5월 6일경까지 DB서버와 웹서버에서 실행하는 명령어가 기록되어 있었으므로, 해킹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공휴일 또는 연휴기간 이후에 접속기록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등 보안관제를 강화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제28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15조제2항제5호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10항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 그리고 과태료 병과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최초로 악성코드에 감염된 직원 A의 업무용 PC에 내부 서버 및 업무용 PC 등에 접속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비밀번호가 평문으로 기록된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저장된 사실과 그다음에 DB서버, 웹서버 등에 접속할 수 있는 IP, 비밀번호 등이 기록된 엑셀파일 형태의 패스워드관리대장과 엑셀 파일의 비밀번호가 평문으로 기록된 텍스트 파일 형태로 함께 저장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 및 고시 제6조제1항 위반에 해당이 되고 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이용자 통지 및 신고를 지연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4일 협박 이메일을 수신한 후에 방통위에는 7월 26일에서야 신고한 사실이 있고, 이용자 통지도 동시에 7월 26일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망법 제27조의3제1항, 시행령 제14조의2 위반에 해당되고 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10쪽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조금 분명하게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법성 판단과 관련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것에 대해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가>인 것이지요?

○ 박노의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나>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성은 현재 찾을 수는 없지만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해 놓은 것, 이것은 별도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뒤늦게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신고한 것,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흡과 관련해서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가 가장 핵심적인 위반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이외의 사실들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사실들, 예를 들어서 망분리 문제, 백업과 일 관리문제, 그다음에 원격데스크톱 업무용 PC계정 접속기록 확인에 대한 보안관제 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 사안의 개인정보 유출과 간접적으로 또는 아주 이런 지엽적인 부분에서 다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직접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간접적이거나 다 유출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예를 들면 망분리는 인터파크가 도입하고 있는 그런 망분리 방식이 아닌 다른 망분리 방식을 채택했다라면 이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백업받은 개인정보 DB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이용자 DB서버에 함께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유출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

○ 최성준 위원장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이고 가장 큰 원인은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지만 이런 것들도 관련이 다 있는지….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 최성준 위원장

- 또는 제가 지금 여쭙 보는 것은 아주 부분적으로라도 관련이 있는 것과 그다음에 지금 이번의 유출과 부분적으로도 관련이 없고 단순히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미흡하게 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이번의 유출과 아주 세부적인 내용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다 연관은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커가 그만큼 나흘간에 걸쳐서 해킹하는 데 그런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기본적으로 유출이라는 것이 한 가지 잘못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은 그렇게 보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우선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거나 또는 논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기주 위원님께서 이 분야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최고전문가가 의견을 주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피심인 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 동원된 해킹방법인 APT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용된 ‘우리 가족’이라는 악성코드가 실은 이것이 이번 해킹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이것을 방지할 수 없었다, 백신으로도 방어할 수 없었다 이런,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해킹을 당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어떤 입장입니까? 즉, 불가항력적이라는 피심인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이며, 또 그런 사유로 해서 이것이 면책이 됩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일단 지능형 지속가능 위협 공격 방식은 어느 정도 상당히 이쪽 보안업계에 알려져 있는 그런 해킹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러한 해킹시도는 수없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의 기업이라면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가족'이라는 악성코드도 물론 새로운 유형의 악성코드가 많이 나오지만 여기에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백신업체들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영세사업자가 아니라면 통상적인 정도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어느 정도는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를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건은 다른 업체와는 달리 어느 한두 가지 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면책 수준의 불가항력적인 그런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몇 가지 쟁점별로 보니까 해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의 방패가 튼튼했다고 한다면 이런 개인정보의 유출사고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개인정보처리자 PC가 켜진 채 퇴근해서 외부에서 업무망과 DB계정 관리프로그램에 접속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 실행 여부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개인정보처리관리자가 PC를 켜놓은 것이 보면 2016년 5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7일간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7일간이고 이외에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관리자의 PC가 접속된 상태로, 그러나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켜져 있거나 연결되어 있었는데 피심인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작업 성격상 장시간의 접속이 필요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쪽에서는 그 관련된 근거를 찾지는 못했지요? 피심인이 장기간의 접속이 필요하다면 관련 근거나 업무일지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때가 또 연휴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피심인이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 실행에 대해서는 관련된 적절한 자료를 우리 쪽에 제출하지 못했다.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예, 맞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우리는 관련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밀보호 암호화 조치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초 감염된 팀장의 PC나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 스토리지 NAS,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피심인의 의견서에는 '직접적으로 서버라든가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ID나 패스워드는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해커에게 노출되지는 않았다. 일반적인 타 사이트의 ID나 패스워드였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쪽 의견서를 보면 내부 서버라든가 그다음에 사내 전산 장비에 접속할 수 있는 ID와 패스워드를 평문으로 기록·보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조사한 것이 아닙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피심인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이지요?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엑셀파일로 비밀번호를 저장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엑셀파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는 또 다른 파일로 가지고 있었고, 그 사안이, 그 내용이 지금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에 직접 관련성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에 하나의 원인 제공이 되었습니까?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직접적이라고 볼 수는 없었고 간접적으로...

○ 최성준 위원장

- 다시 말하면 거기에 있는 비밀번호를 해커가 찾아서 그 비밀번호로 접속한 것은 아니지요?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예, 직접적인 원인은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만 평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제가 정리한 것처럼 위법성을 논할 때 개인정보 유출과 엑셀 파일로 되어 있는 비밀번호는 연결시키지 않고 별도로 그것은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한 것이지요?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결정적으로 피심인 쪽에서는 개인정보 외부 유출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 이것은 2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로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유출된 개인정보 DB를 외부에서 복원할 경우는 정상적인 데이터 배열이 안 되어서 이용자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 즉 식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이 피심인 의견대로 예를 들어서 복원이 안 된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문책할 수 없는 사안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아닙니다. 복원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유출된 것은 맞고 유출됐으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조사관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단 유출된 것이 상당한 데이터가 이미 밖으로 나가서 해커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해커가 협박을 한 사실까지 저희들이 다 확인하였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도 이따가 아마 피심인 의견서에 있는 것으로 봐서 피심인이 구두 진술할 때 그 부분을 언급할 것 같은데 지금 피심인이 말하는 주된 쟁점은 해커가 자신이 갖고 있는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DB를 보여줬는데 그 보여준 것이 인터파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DB와 배열순서가 같다. 그런데 그 개인정보를 탈취해 갔다면 다시 그것을 보여주도록 나타냈을

때 그 배열순서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커가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개인정보 배열순서가 같은 것으로 봐서 해커가 인터파크가 저장해 갖고 있던 비밀번호를 탈취까지는 못해 갖고 안에 들어와서 있는 비밀번호 데이터를 보면서 찍어 놓은 화면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하면서, 따라서 유출됐는지가 불분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이따가 조금 더 진술인이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것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나왔습니까?

○ 김광연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 예.

○ 고명석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나오신 분이 어느 분이시지요? 김광연, 고명석 두 분 나오셨습니까?

○ 김광연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 예.

○ 고명석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앉으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총론적인 질문 몇 가지를 해 보겠는데 두 분은 여기 민관합동조사단에 참여하고 또 우리 방통위 자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조사에 두 분 다 쪽 참여했습니까?

○ 김광연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 예.

○ **고명석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이번에 인터파크가 공격을 당한 공격 기법, 수법 이것이 그동안에 우리 국내에서 일어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그때 이용했던 그런 공격기법과 비교해서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고난도인지, 저난도인지 그동안 분석해 보면서 파악한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 **김광연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 가장 최근에 APT 사고 유형이 대부분 한글파일 취약점이나 아니면 지인을 사칭해서 APT 공격과 스페어 피싱 공격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인터파크 최초의 감염자 PC를 공격했을 때도 동일한 유형이었고, 내부 감염전파나 악성코드 전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격기법이 조금 신종기법이긴 했지만 일단 공격자가 내부 감염PC로 전파시킬 때 최초의 감염자 PC에서 확인됐던 패스워드나 이런 것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명석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 있었던 SK컴즈 사고를 되돌아보게 되면 당시에든 문제가 됐었던 것이 개인정보 취급자가 PC를 켜놓고 퇴근을 했던 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그 사유로 인해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15년도에 해당 법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개정하면서 최대 접속시간 제한을 뒤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런 원인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인터파크와 SK컴즈는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사무처에서 보고한, 무엇을 조치하지 않았고 위반했고 이런 이야기 말고 쭉 분석해 보면서 인터파크의 해킹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수준은 어떤 것 같습니까?

○ **고명석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 일단 저희가 한 달 가량 인터파크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실사한 바로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장비를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기업 못지않게 잘 되어 있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것인데 그런 운영 측면에서는 지금 드러났던 문제처럼 장비를 관리하는 사람의 문제, 장비를 이용하는 보안 인력의 문제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운영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본다?

○ **김광연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 예, 보안 정책 쪽에….
- 이기주 상임위원
 - 아까 말한 다른 기업에 비해서라는, 다른 기업이라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고명석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 동 규모의 사업자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조사했었던 홈쇼핑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 김광연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 SKT….
- 고명석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 통신사 정도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인터파크에 대한 PIMS 인증 심사 때 참여했습니까, 아니면 KISA의 다른 직원들이 참여했습니까?
- 고명석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 제가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참여했습니까?
- 고명석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 참여하지 않았습니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보통 PIMS 인증 심사를 나가면 체크리스트에 충족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도 직접적인 심사항목으로 보긴 하지만 그 기업의 전반적인 실태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오늘 이야기 안 하셔도 되는데 PIMS 인증을 하기 위한 심사를 할 때 실태 내지는 수준과 이번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것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내지는 그때는 제대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못 했다든지 이런 것이 혹시 있으면 이야기하거나 다음번에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방통위든 KISA든 쪽 사건을 접해 보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했는데 방통위에서 새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관련해서 내지는 법령 개정된 것 이런 것 등등해서 계속 업종별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교육도 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에 대한 문제도 인터파크를 포함해서 온라인 쇼핑몰이 됐든 이런 쪽에 교육한 것이 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KISA는 어떻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 **이기주 상임위원**
 - 여태까지 매번 교육하고 지침 내리지 않았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계속 해 왔습니다만….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교육은 KISA 쪽에서 많이 전담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문제가 생기면 KISA 쪽에….
- **이기주 상임위원**
 - 기획은 방통위가 하고 실제로 교육 집행은 여기에서….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되 집행은 KISA에서 했는데 당연히 아마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참고로 지금 이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을 저희가 2015년 5월에 의결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 주요 개정내용이라고 해서 7개가 있습니다. 그 7개 중 하나가 지금 지적하신 접근통제 장치 시스템 접속시간 제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수십 가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딱 7가지인데 이것을 교육할 때 누락했다고 생각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KISA에서 조사 경험이 많으니까 지금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 실행 여부이지 않습니까?

○ 김광연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피심인 쪽에서는 접속장치 제한 조치 기능을 시스템상 운영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시스템상으로는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가 있더라도 실질적 접근통제 기능 수행 여부는 다시 재접속할 때 ID나 패스워드 입력 등 이러한 재접속 과정을 거쳐야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그런데 이것이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접속되어서 자동적으로 네트워크를 선택하면 사용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방치해 놓았다, 이것이 가장 큰 잘못이지 않습니까?

○ 김광연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 인터파크의 경우에 발견되는 것입니까?

○ 고명석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 위반사실이 발견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아니요. 다른 데서도 이렇게까지 흔히 시스템을 운영하냐는 것이지요.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

○ 김광연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 당연히 제한 조치의 보안정책상의 장치는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안정책은 있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실행을 제대로 안 한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지요?

○ 김광연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이기주 위원님께서 여쭙 보시는 것은 혹시 다른 기업체도 많이 가 보셨을 테니까 그런 데서는 이런 접속시간 제한 조치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쭙 보신 것 같습니다.

○ 고명석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 제가 2015년부터 조사를 했었는데 최대 접속시간 제한을 위반해서 그 부분이 적발되어서 처분한 사례는, 저희가 개선조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여기는 특이한 경우이고...

○ 고명석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 맞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것이 허점이 되어서 개인정보 DB를 탈취당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네요?

○ 고명석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 예. 실제 인터파크의 경우에 STG Client라는 그 서버 접근 제어 프로그램을 보면 숫자만 넣으면 바로 조치가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한 것이 고객의 DB가 보관되어 있는 HQDB 접속기록을 확인했습니다. 2016년 5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전체 접속기록 190건 가운데 10% 수준인 99건이 12시간 이상 접속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오래 접속되어 있는 것이 3일 동안 접속된 상태도 있었고, 나머지 부분도 왜 이렇게 장시간 접속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인터파크 쪽에서 소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이러한 것들은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원인이 뭘까요? 업무관리자들이 이렇게 장시간 동안 접속된 상태로 방치해 버리는 것, 접속제한 장치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하는 것들은 왜 그렇지요?

○ 고명석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 실제 보안과 업무 편의성을 따졌을 때는 보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파크의 경우에는 실제 저희 방통위에서 쓰는 업무망 프로그램과 외부망 프로그램을 비교했을 때 30분 정도에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조치만 해도 충분히 업무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예 그런 조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운영의 부적절성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지요?

○ 고명석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냥 소홀히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 고명석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것 또 확인할 것 있으십니까? 제가 2가지만 여쭙 보겠습니다. 유출된 것 중에 일방향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 고명석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일방향 암호화된 비밀번호는 이것을 가지고 간 사람이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광연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 확인해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암호화가 sha256으로 알고 있는데 암호화 강도를 깨기에는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판단되고 있고 깨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사실상 비밀번호는 유출되기는 했지만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봐도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 김광연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이것은 조금 가정이라서 묻는 것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까 고삼석 위원님이 제일 처음에 물어보신 것처럼 APT 공격이라든지 '우리가족.zip' 악성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온 악성코드 또 나름대로의 최신의 공격방법 이런 것들이기는 하지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아까 보고할 때 가장 큰 것은 접속시간 제한을 안 지킨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또는 세부적으로 연결된 부분들이 있다고 쪽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완비하고 있었다면 비록 이런 APT 공격이나 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가족.zip' 악성코드를 통해서 공격을 하더라도 방어를 할 수 있

었거나 또는 상대방이 들어올 때 상당한 어려움을 더 주었을 것이라라고 볼 수 있습니까?

○ 김광연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사무처에서 이야기할 때 해커가 3일간 PC 9대와 서버 2대를 악성코드로 감염을 시켜서 원격으로 제어를 했다는데 두 분이 분석해 보면 그 작업기간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더 긴 기간이었습니까?

○ 김광연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 로그 기반으로 저희가 분석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맞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리고 특히 PC도 마찬가지로 PC는 제치고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프로그램을 돌려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파크인 경우에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 김광연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 일단 서버 같은 경우에 메모리상에도 존재했었고 명령제어 서버에 접속한 이력이 방화벽에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방화벽에서도?

○ 김광연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 접속이력도 확인이 됐습니다.

○ 고명석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 실제 지금처럼 신종 악성코드 같은 경우에는 백신 프로그램업체들과 공유되지 않은 이상 현재 인터파크에서는 당연히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보호조치들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백신에서 모든 악성코드를, 당장 제가 처음 만든 코드 악성코드를 뿌린다고 했을 때 그것을 잡아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음 개발 해커가 처음 만든 악성코드의 경우에는.

○ 이기주 상임위원

- 보통 신종 악성코드가 전파가 되고 감염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그것에 대한 백신을

개발해서 전파를 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은 여기에 이용된 악성코드에 대한 백신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 **고명석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 맞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다른 기술적 조치나 여러 가지 관리를 잘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백신이 없었어도 예방 내지는 조기 탐지가 가능했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 **고명석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 예, 맞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따가 피심인이 무슨 이야기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잘 들어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고명석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더 확인하실 것 있으십니까? (……)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인터파크 측 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의견진술인 입장)

저쪽으로 앉으십시오. 우선 나오신 분 확인을 하겠습니다. 인터파크의 이상규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윤혜정 IT지원실장님 맞습니까?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광준 변호사님 맞습니까?

○ 김광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준용 변호사님 맞습니까?

○ 박준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예.

○ 최성준 위원장

-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피심인 일반현황을 보니까 대표님 몇 분이 계시던데 지금 나오신 이상규 대표님께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지금 인터파크 사업총괄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7월 1일자로 총괄사장으로 왔는데 지금 현재 7월 1일자로 제가 인터파크의 등기이사가 아니어서 그래서 기존의 김동업 대표 이사가 물러나면서 현재로서는 인터파크의 강동화 부사장과 박진영 부사장의 공동대표 체제로 법적인 대표는 두 사람 공동대표 체제로 되어 있고, 사실상의 사업은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내년 주총 때 등기이사로 승인되면 대표이사를 바꿀 예정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안 나와 있네요? 그리고 윤혜정 IT지원실장님은 몇 년도부터 실장을 맡으셨지요?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2006년에 실장이 됐고, 제가 인터파크에 '99년에 입사했는데 그 이후로 시스템관리팀장 하면서 보안에 관련해서도 총괄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네 분 중에 어느 분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상규 사장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안녕하십니까? 인터파크 사장 이상규입니다. 이런 소중한 발언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선 인터파크의 전 임직원을 대신해서 이번 침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해 큰 불편과 사회적으로도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인터파크는 1996년 당시 데이콤이라고 하는 통신사업자의 사내 벤처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터파크의 공동창업자로서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산업을 선도해 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도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해킹은 드문 일이 아니라 계속 되고 있는 전쟁입니다. 끊임없는 침해시도를 막아내지 못하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기준을 100% 충족하면 해킹을 막을 수 있다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킹은 항상 법을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해킹은 지난 2008년 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시작인데 제가 이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의 협회인 온라인쇼핑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어서 옆에서 꼭 지켜보았는데 그 피해가 정말 막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파크는 지속적인 해킹시도를 잘 막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인적·물적 보안체계를 갖추는데 업계의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20년 동안 사업을 해 오면서 별 사고 없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적인 사업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2002년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의 티켓시스템을 도맡아서 운영했었고 지금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티켓판매시스템을 인터파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를 내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적어도 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위법하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커로부터 협박을 받고 사고를 인식한 뒤에 곧바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여 해커 검거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그때 놀랐던 것은 사이버수사대에서 이렇게 회사가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초기에 바로 수사를 의뢰한 곳은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이버수사대에서도 최대의 수사팀을 꾸렸고 해커와 메일로 협상을 하기 위해 메일대응전담팀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2주 동안 서로 주고받은 메일이 50여 차례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해커와 협상을 하고 우리는 함정수사를 펼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일을 보낼 때 당연히 역추적 하는 파일도 심어서 보냈고 2주간 굉장히 많은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향신문에 특종 보도가 되면서 해커와 연락은 끊겼고 최종 해커 검거는 실패하게 됐고, 결국 북한 정찰총국 소행으로 밝혀져서 검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해커와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검거 작전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용자 고지와 방통위 신고는 유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지 사고의 축소 은폐 의도는 애초에 없었던 것입니다. 경향신문 보도 후에 이용자 통지에 대해서도 유출의 최대 범위를 산정하여 1,000만명에게 통지했습니다. 이후 방통위 지시에 따라 휴면 회원에게도 통지하였고, 이는 그만큼 유출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최대치를 산정하여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가 유출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유출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아주 일부만 유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일한 증거는 인사과장인 우리 직원 PC와 해커가

이용한 수원에 있는 한 PC방 사이에 전송된 9.4G, 이는 우리 방화벽에 남아 있는 기록인데 이 9.4G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조사결과입니다. 개인정보와 무관하게 직원 인사과장의 PC에서 회사의 인사정보를 가져간 것인지도 모르고, 개인정보 파일 16개 중 일부를 가져간 것인지도 모릅니다. 개인정보 파일 16개의 총 용량이 12.8G입니다. 그런데 방화벽에 남아있는 9.4G의 용량은 총 개인정보 파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럼 개인정보 파일 16개 중에 3분의 2를 선택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이 파일들이 엑셀 같은 그런 파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두 개의 중요한 메타 데이터를 가진 파일이 전송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을 가져간 것입니다. 즉, 개인정보 유출의 명확한 확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해커가 보낸 동영상은 해커의 PC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으로 보면 해커는 인터파크 개인정보 파일 확보에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경험하며 반성해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논리적 망 분리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APT 방식의 지능형 공격도 물리적 망분리를 하고 있었다면 해킹 확률을 몇 십 배 낮출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APT 탐지 시스템도 풀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처럼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APT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물리적 망분리가 유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사실 물리적 망분리도 논의를 우리가 해 왔던 것인데 미리 바꾸지 못해서 사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작업으로 물리적 망분리 시스템 구축을 이번 달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인터파크는 이번 침해사고로 인해서 고객과 투자자의 신뢰를 잃고 사업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보도 직후 한 달간에 15만명의 회원이 탈퇴했고, 올 3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대비해서 37.4%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해킹 보도 이후 주가도 30% 정도 하락해서 시가 총액 측면에서도 1,300억원 정도의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꼴이 됐습니다. 지난 20년간의 공든탑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자들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제기한 10여건의 집단적인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인터파크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경우 회사는 막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터파크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수익을 얻는 기업이 아닙니다. 인터넷 상거래회사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니다. 티켓을 팔거나 여행상품을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에서는 물건을 팔 때 서로를 알아볼 수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인터넷상에서는 누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건을 주문한 고객이 주문을 취소하거나 배송상태를 확인해 보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와 인터파크의 실질적인 매출과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는 본인확인에 필요한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이것도 없앨 수 있도록 네이버 ID나 카카오톡 ID나 페이스북 ID나 이런 것으로 인증할 수 있는 방식을 연내에 도입해서 아예 개인정보를 가지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가 이번 사고로 무너진 공든탑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것 더 말씀할 것은 없으십니까?

○ 김광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인터파크 임직원을 대표해서 사장님께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대리인이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나와 있는 인터파크 해킹사건 관련 의견이라는 PPT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하실 것입니까?

○ **김광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말씀하시기 전에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처분사유'라고 표시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처분사유 중에 저희 처분사유가 아닌 것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처분사유가 뭔지는 혹시 밖에서 저희가 위법성 설명할 때 다 들으셨습니까?

○ **박준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저희가 최초의 시정조치(안)를 받고 거기에 대한 처분사유가 이 건의 처분사유라고 생각했는데 그 내용하고 제가 밖에서...

○ **최성준 위원장**

- 혹시 밖에서 여기 안에서 회의하는 내용 못 들으셨습니까?

○ **박준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그런데 제가 말씀으로만 들어서 처분사유가 조금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를 들어서 이 PPT를 보시고 설명하시는 것 같으면 '처분사유 (3)의 비밀번호 작성규칙' 이런 것은 저희 처분사유에 없습니다.

○ **박준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처분사유 (4) 문서 및 내부 시스템 비밀번호 관리' 이 부분도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그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위법하다고 본 것이지, 이번 유출과 관련되어서 이것은 처분사유로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기껏 설명했는데 저희가 아니라고 하면 허탈해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뒤에 감안했으면 좋겠는 것이, 들어오시기 전에 사무처 그리고 또 KISA 연구원들과 우리 위원님들이 Q&A 하는 것 들으셨습니까?

○ 박준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같이 겸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참고로 어제 다 이것을 읽었으니까 핵심만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준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알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PPT 순서대로 말씀드리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미 다 말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이번 해킹에 사용된 신종 악성코드가 전 세계 바이러스 업체들의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 Virus Total에서도 미인지가 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기존 보안 프로그램으로는 검출이 불가능한 점이었음을 한 번만 더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5페이지 최대 접속기록 제한 등 접근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에 방통위의 고시가 개정되면서 최대 접속시간 제한에 대한 규정이 새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식이 부족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면밀히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단계에서 어떠한 형태로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터파크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관련된 접근통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말씀하시는데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조금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설명이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갈까 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는 저희 고시에 있는데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이 없다, 당연히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곳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수로 가이드라인을 만듭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고시에 있는 여러 가지 사항도 미니멈,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런 조치 다 했다고 해서 우리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다 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항상 그 시대에 맞는 최선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다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고시를 개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 가다가는 전체 이야기의 흐름이 이상하게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고, 계속 설명해 주시지요.

○ 박준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관련법령에서 접근통제가 요구되는 대상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개인정보 DB서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인터파크 개인정보 DB서버로 접근하는 경우는 크게 PC를 경유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있고, PC를 경유하지 않고 서버로 직접 접근하는 경우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심인은 PC를 경유하지 않고 서버로 직접 접근하는 경로는 아예 폐쇄를 시켜 뒀기 때문에 문제는 PC를 경유해서 접근하는 경로만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 건 해커도 이 PC를 경유해서 서버에 접근했었습니다. 이 경로에 대해서 피심인이 취해 둔 접근통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심인이 외부에서 내부로 접속하는 경우에 2단계 인증을 거친 VPN을 통해서만 연결이 가능하도록 2단계 인증 조치를 취해 뒀습니다. 다음으로 필수적인 경유코스라고 할 수 있는 사내 전 PC에 대해서 10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계정이 차단되도록 잠금설정을 해서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를 나름대로 취해 두었습니다. 이 PC 잠금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화면보기 실행이 되는 것과는 다르고 계정 연결을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또 피심인은 최대 접속시간으로 설정된 이 10분을 직원 개인이 임의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까지도 사내 전체에 취해 두었습니다. 본 건의 경우에도 해커가 침입해 사용한 PC는 이러한 피심인의 조치에 따라서 잠금상태에 있었고, 해커가 어떻게 이 잠금상태에 있는 PC 계정을 다시 연결을 시켜서 개인정보 DB에 접속하게 된 것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둘째로 피심인은 개인정보 DB서버에 2시간의 최대 접속시간 제한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정조치(안)에서는 개인정보 DB에 12시간 이상 이렇게 접속이 유지된 기록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이 접속시간 제한 조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먼저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접속이 이루어진 사례는 본 건 해킹하고는 전혀 무관한 다른 직원의 PC에서만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장시간의 접속사례가 직원 1명 PC에 대해서 발생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 장시간의 일종의 이상현상이 피심인 전체의 시스템상의 오류라거나 설정상 잘못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직원 PC가 어떤 상태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접속이 있었는지는 안타깝게도 이 해킹 이후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전 PC를 다 재설치 해 뒀기 때문에 이 PC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른 전 PC의 경우에는 이런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접속문제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직원 1명의 PC에 대해서 생긴 일종의 이상현상을 이유로 피심인의 이런 접속시간 제한 설정 자체가 완전히 무의미한 것으로 취급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2시간 접속시간 제한은 2시간 동안 PC와 서버 간에 아무런 교신이 없는 경우에 접속이 차단되는 설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PC와 서버 간에 교신이 있게 되면 접속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시간 중이나 또는 일상적으로 야근을 하는 시간에 이루어진 2시간 이상 접속이 유지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 피심인의 접속시간 제한 설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결론짓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밖에 시정조치(안)에는 피심인이 운영하고 있는 통합관리계정시스템의 접속시간 등에 관한 언급이 있었습지만 이것은 이 통합관리계정시스템은 개인정보 DB뿐만이 아니라 피심인이 운영하고 있는 전체 서버 시스템에 다 연결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는 다른 것이어서 관련된 법령 위반 문제와는 관련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원격데스크톱 연결에 관한 부분

입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관련법령에서는 개인정보가 P2P나 공유 설정 등을 통해서 공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컴퓨터나 모바일기기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심인이 설정해 둔 이 원격데스크톱 연결은 공유 설정하고는 명백히 다른 기능입니다. 원격데스크톱 연결은 윈도우 기본 기능 중 하나로서 공유 설정하고는 전혀 다른 기능으로 아예 PC 내 기본 프로그램 자체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피심인은 원격데스크톱 연결 시에 시정조치(안)에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이 공유설정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공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법령의 기준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이 부분의 위반사항은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백업파일의 암호화 및 분리 보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백업파일이란 아니면 원본파일이란 간에 모든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보관해야 한다고 하는 관련 규정의 요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암호화 저장 대상인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나 계좌정보 이런 특정 정보만이 암호화할 것을 법령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피심인 같은 경우는 이 항목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를 암호화해서 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 보관 문제 역시 관련 법령상에서 이런 개인정보의 백업파일을 분리해서 보관해야 한 다라는 분리 보관에 관한 규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비록 이것이 해킹 경로상에서 이용된 바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유로 법령 위반을 인정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명백한 증거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신 그림은 민관합동조사단과 방통위가 발표한 해킹 경로 중에 개인정보 유출경로와 또 각각의 단계에서 확인된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심인의 웹서버에 저장된 16개 개인정보 파일이 직원 2명의 PC를 차례로 거쳐서 외부 PC로 전송되어서 유출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개월 동안 방통위, KISA, 경찰청 등의 기관에서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조사해 주셔서 면밀하게 다 사안을 파악하려고 노력해 주셨습니다만 이 중에 나와 있는 어느 PC에서도 개인정보 파일이 전송되어서 저장된 흔적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심인의 외부 영역으로 유출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직원 B의 PC에서 외부 영역 사이에 남아 있는 트래픽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 웹서버에 저장된 16개 파일의 용량은 12.8G였고, 외부로 나간 트래픽 총량은 9.4G였습니다. 이처럼 트래픽 용량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 먼저 트래픽은 그야말로 데이터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서 그 데이터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부로 나간 데이터가 과연 개인정보였는지를 이것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은 당초 웹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이 16개 파일이 다 압축파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축파일이 압축되지 않은 그냥 일반 파일을 16개로 나눠 가지고 그 16개 파일을 각각 압축한 것이 아니고 이미 압축상태에 있는 6개 파일을 경우에 따라서는 3개, 경우에 따라서는 7개 이렇게 크기별로 쪼개서 만든 압축파일을 다시 쪼개서 만든 압축파일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중에 분할된 압축파일, 이렇게 쪼개진 압축파일 중에 단 1byte라도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파일 전체의 압축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트래픽 총량을 보면 해커가 이 16개 파일 전부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해커가 가져간 압축파일을 해제해서 개인정보 데이터 복원에 성공했다고 단정을 짓

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해킹 경로와는 무관하게 해커가 피심인에게 협박 목적으로 보냈던 동영상 파일이 있습니다. 당초에 피심인이 이 동영상을 보고서 개인정보 유출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만 그 이후에 좀 더 영상을 면밀하게 분석해 본 결과, 이것이 개인정보 DB가 외부로 유출되어서 복원된 증거로는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에 해킹대상이 된 개인정보 DB가 오라클이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그런데 오라클 DB 서버의 특성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른 기기로 옮겨서 데이터를 복원해서 실행하였을 경우에 데이터 정렬순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내용은 피심인이 오라클 본사에 직접 문의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 다른 기기에서 데이터를 복원해서 실행시킬 경우에 이 오라클이 지정해 놓은 특정한 명령어 오더 바이(order by)라고 하는 특정한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는 한 데이터 정렬순서를 원본과 동일하게 일치시킬 수 없다, 정확하게 표현에 따르면 '원본하고 일치한 것을 개런티 할 수 없다'라는 회신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수천만 건의 정보에 이르는 것을 우연에 의해서 일치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잠깐 죄송한데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13페이지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Chris Saxon입니까? 여기 보면 Q&A 주고받은 것이 2015년 11월 26일로 나오는데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 이것을 직접 확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오라클 홈페이지에 있는 Q&A 내용을 따온 것입니까?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이것은 오라클의 Q&A 내용입니다. 오라클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오라클 전문가 사이에서 'Q&A한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고 저희가 받은 내용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직접 요청을 했는데 홈페이지를 확인하라고 한 것입니까?

○ **박준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제가 조금 잘못 안 것 같습니다.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저희가 오라클에 직접 기술에 대한 부분 문의를 했습니다. 아키텍처(architecture)는 오라클

에서 정확하게 알 것이기 때문에 문의를 했었고, 오라클에서 받은 내용은 오라클의 전문가에게 'Q&A 했던 기존 내용 중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이 될 것 같다'라고 받은 내용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니까 오라클에게 문의를 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준 것이 아니고 '1년 전에 만든 Q&A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참고하시오' 이렇게 왔다는 것 아닙니까?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줄 수 있는데 이미 이 사이트에 그것에 대한 답이 있으니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다'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1년 전 답변이라고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 **박준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그것은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잘 몰랐습니다. 어쨌거나 내용은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1년 전의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하고 또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말씀하십시오.

○ **박준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화면은 해커가 실제로 인터파크에 보냈던 동영상 중에 일부를 캡처한 화면이고 왼편에 있는 화면은 인터파크의 실제 운영DB, 실DB를 캡처한 화면입니다. 해커가 보낸 동영상을 보시면 해커가 어떤 명령어를 입력해서 어떤 결과값을 도출했는지 그 과정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 그림상에 보면 저희가 빨간색으로 박스를 2개 쳐 놨습니다만 위쪽에 이렇게 길쭉하게 쳐져 있는 이 박스가 해커가 실제로 집어넣은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를 보면 해커가 명백하게 오더 바이(order by)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은 채로 결과값을 도출했고 그 결과값이 피심인 내부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원본 DB의 데이터 정렬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라클 설명에 의하면 외부에서 데이터를 복원해서 실행시킨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결과값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동영상이 개인정보 외부 유출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저희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특히 당초에 피심인이 해커로부터 협박 메일을 받고 50여차례 교신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당신이 우리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달라' 왜냐하면 이런 형태, 경우에 따라서는 장난일 수도 있는 이런 형태의 협박 메일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일단 증거를 쥐야 우리가 더 이상 협상을 진전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요청했는데 만약에 해커가 정말로 피심인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을 증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직접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 사본을 그대로 보내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커는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주기를 거부하다가 그 이후에 굳이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한 동영상 정보를 피심인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것을 앞서서 말씀드린 개인정보 파일하고 트래픽 사이의 용량 차이, 또 압축파일 해제도 실패할 가능성 이런 것들과 결합을 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실제로 해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동영상뿐이고 DB 자체를 유출해서 가지고 나가는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 최성준 위원장

-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혹시 지금 추정이겠지만 인터파크 쪽에서는 이 동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추정을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커가 그 개인정보 DB를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다시 압축을 풀어서 해 놓은 것이 아니라면 이 DB 화면은 해커가 어떻게 만들어서 동영상을 보냈다고 추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 박준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이것은 사실 해커가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작된 것인지를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러한 형태의, 이러한 배열 순서를 보일 수 있는 것은 저희 DB에 직접 접속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파악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의 조회, DB 직접 조회로 인한 결과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와 같은 조회를 하면 인터파크의 서버 안에 이와 같은 화면을 어떤 형태로든 가져갔으면 흔적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저희도 이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관련된 로그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관련된 로그가 없으면 내부에서는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그런데 로그 관련해서 DB 조회했던 그런 로그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관련된 로그들을 쭉 기록하는데 짧게 수행되는 모든 로그를 다 기록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로그들이 보통은 주기적으로 메모리에 있는 것들을 쭉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데 길게 기록됐던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짧은 시간 동안에 수행이 됐다면 확인이 실질적으로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인터넷진흥원에서 나오신 두 분, 지금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로그가 남지 않고 그렇게 화면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 김광연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 제 생각에는 해커가 일단은 처음에 테이블 카운팅을 한번 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조회를 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제 생각에는 내부에서 했다고 하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인터파크 내부 쪽에서 SQL 쿼리를 할 때 소프트웨어를 어떤 것을 사용하시는 지 일단은 여쭙 보고 싶습니다.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토드(Toad)나, 여기에서 일단 촬영된 것에서는 오라클사의 제품을 썼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토드(Toad)와 같은 그런 제품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광연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 그럼 결론은 인터파크 내부 쪽에서 해커가 실행했던 프로그램은 SQL developer라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인데 그것이 일단 인터파크 내부 쪽에서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입니다. 결론은 외부 쪽에서 실행했다고밖에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은 실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이다, 아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된 것이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정도 하지요. 말씀하십시오.

○ 김광연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 일단 내부 망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깔렸다고 한다면 어떤 증거가 남았을 텐데 그것은 혹시 확인하지 못하셨습니까?

○ 고명석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 인터넷 명령어 있지 않습니까?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사실 그것을 확인하려면 전체 PC를 다 확인을 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PC 전체 클렌징 하기 위해서 전 PC 다 재설치하는 과정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PC를 다 확인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저희가 관련 내부 이력들도 확인을 했을 때 DB 쿼리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해커가 DB서버에 접속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세부 내역들에 대해서 기록들이 전부가 없다는 것이지, 해커가 우리 DB서버에 접속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최성준 위원장

- 아닙니다. 그것을 여쭙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동영상에 관한 부분만 여쭙 보는 것입니다.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예, 맞습니다. 우리 내부의 어느 PC에서 이용해서 내부에서 쿼리를 날려서 그것이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안 되지만 이것이 우리 웹서버에 있는 DB에 쿼리를 날려서 그 부분을 스크린캡처로 영상을 찍은 것이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이 인터파크 서버에 흔적이 남지 않고 가능하냐는 것이지요. 지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내부에 어딘가 그 기록을 못 찾았다는 것이지, 기록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해커가….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기록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왜 컴퓨터 전체를 클렌징 해서 포맷을 새로 했습니까? 그것을 끝까지 찾아야지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밖으로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것을 끝까지 찾아야지 그것을 찾지도 않고서 왜 서둘러서 방통위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부분을 클렌징 해서 포맷을 새로 했습니까?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저희가 첫 번째로는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해서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주요한 수사는 1차적으로 사이버수사대에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고 즉시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관들이 나와서 수사의 목적이 물론 경찰은 그 당시는 해커의 검거에 있었지만 해커가 어떻게 활동을 했고 서버에 어떻게 접속해서 어떻게 가져갔는지와 관련해서는 전부 조사했고, 그 조사한 내용은 방통위가 나왔을 때 그대로 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에서 방통위로 그대로 다 자료를 넘겨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이

버수사대의 조사가 다 있고 나서 이것이 악성코드가 어딘가에 추가적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클렌징은 나중에 한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경찰이 그 안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예, 그 내용을 다 방통위에...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경찰이 가지고 있는 서버를 이용해서 동영상 촬영한 것의 흔적을 찾아주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내부의 것을 촬영해서 나간 것이고 외부에 나간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 없이 말씀만으로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흔적은 잘 못 찾겠다' 그러면 저희로서 그런 것은 인정하기 힘듭니다.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의 핵심은 지금 해커가 우리에게 보내준 이 동영상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해커가 인터파크의 개인정보를 가져가서 그 정보를 다시 실행하면서 찍은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은 명백한 증거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희는 명백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또 논의하기로 하고 설명을 계속 마저 하시지요.

○ 박준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쪽 이야기든지 차분히 듣고 싶은데 뭔가 저희가 쫓갑니까?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고 위원님 말투가 약간 짧게 하고 뭐하고 이러는데 이야기 한번 계속 해 보십시오. 제가 자꾸 부담이 되어서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해서 차분하게...

○ 박준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이 PC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동영상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실은 이 동영상

상을 보고서 인터파크에서도 동영상 내용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이것 때문에 이것을 보고서 '그러면 유출이 실제로 있었나보다'라고 짐작하고 그때 유출 통지까지 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시점에는 물론 해킹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여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때 시점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또 어딘가 PC에 악성코드가 남아 있어서 2차, 3차로 해킹이 일어나서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이것을 방지하는 것이 사실은 그때로서 더 시급한 업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를 클렌징 작업을 했던 것이 이런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제가 부연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헐박메일의 마지막에 보면 해커가 인터파크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위협적인 그런 행위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라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경찰청 자문을 구해서 혹시라도 악성코드가 어디에 심어져 있어서 2차 공격이 있을 수도 있으니 클렌징하는 것이 좋겠다고 자문을 구하고 그 이후에 전체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도 전체 작업하는 것이 굉장히 대대적인 작업이었고 엄청난 일이었는데 일단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했던 것이고 경찰청에서 조사하던 당시에는 이것이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까지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출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같이 작업을 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한참 지난 시점에 다시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과정 중에 이런 부분들이 발견됐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희 입장에서는 서운한 것이 경찰이 조사하는 것과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하는 것과 다른 것은 아시지요?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경찰은 어떤 범죄행위를 했는지 해커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는 개인정보가 어떤 경위로 어떻게 유출됐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잘못이 있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고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정보 개개인에게 유출됐다는 통지를 해서 다 알려서 해커가 숨어버리게 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우선 개인정보 유출 경로에 대한 조사를 그것이 며칠이면 될 테니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클렌징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 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조금 저희로서는 서운합니다.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죄송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계속 말씀하시지요.

○ 김기석 개인정보보호조사팀장

-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만 경찰 쪽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경찰 쪽에서는 같은 국가기관끼리 법을 위반하라고 자기네가 안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저희 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하시지요.

○ 박준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항이 모든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보호조치 위반 및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인정하셔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실 때 적용되어야 할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입니다. 자료 1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은 매출액 연동 과징금과 정액과징금 2가지 방식의 과징금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매출액 연동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만일에 객관적인 위반행위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정액과징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의 경우에 피심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위반행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결국 이것은 개인정보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액 연동 과징금을 적용하려면 피심인이 보호조치를 다 하지 않은 행위, 예컨대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계시는 개인정보 DB서버에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를 해 놓지 않은 행위, 이런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피심인이 이런 예를 들어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매출액을 올렸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매출액이 무엇인지 그 범위를 특정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과징금 제도는 위법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이고 실제로 같은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에 규정이 되어 있는 여타의 과징금 부과사유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이용이라든가 미동의 제3자 제공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집·이용 또는 제공 행위들에 의해서 매출액이 발생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과 대비해 보면 개인정보보호조치 위반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발생할 수 없는 이런 본 건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연동 과징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점에 착안해서 이 유출이 현재 의심되고 있는 개인정보 자체와 관련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 연동 과징금을 적용한다라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은 명백하게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 건에서 이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는 보호조치 위반행위일 뿐이기 때문에 연동되어야 하는 매출액은 이 개인정보가 아니라 피심인의 보호조치 위반행위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개인정보 자체를 매출액 산정기준으로 삼게 되면 그것은 명문으로 정한 과징금 기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말씀드린 것처럼 피심인의 보완책

에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해킹이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만 법률을 적용해서 피심인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것은 법 적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된 방통위 고시와 정보통신망법 등의 기준에 의거해서 판단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추가로 말씀하시지요.

○ 김광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시정조치(안)에서 개인정보가 중복을 제거하고 2,000여만 건이 유출됐다고 보고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압축된 파일 6개가 유출되었다고 조사결과 발표된 12.4G에는 ID와 일방향으로 암호화된 비밀번호까지 포함된 휴면형의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방향으로 암호화된 경우에 있어서는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된 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ID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 APT 공격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인터파크도 APT 공격에 의해서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APT 공격이 전혀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고 과연 인터파크에 동원된 APT 공격의 방식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SK컴즈 사건의 경우에서도 APT 공격에 의한 해킹을 당했지만 당시의 해킹은 알집프로그램이라는 보안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파크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습성과 그다음에 가족관계까지 면밀히 먼저 연구를 한 다음에 '우리가족' zip이라는 파일을 메일로 보내서 더더구나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은 신종 악성코드를 이용한 그런 공격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결이 2건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옥션 해킹사건과 SK컴즈 해킹사건인데 옥션 대법원 판결에서 정보처리시스템에는 취약점이 내재할 수밖에 없으며 사후적인 해킹이 항상 앞서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적인 보안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한바 있습니다. SK컴즈 사건에서는 이런 같은 맥락에서 결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을 정한 데 있어서는 당시에 정한 관련 법령 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해킹사건은 사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 이러이러했다'라고 한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 쉽게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쟁점이 된 최대 접속시간 위반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렇게 했다면 해킹이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는 관련고시, 관련법령 바로 그 당시의 해킹 수준과 보안기술을 종합해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로서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의무 이행을 다 했다고 한다면 과연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약간 법리적인 부분이긴 한데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과거

의 고시는, 2015년 5월 이전의 고시는 제1조에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대법원이 판단한 것의 근거를 거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5년 5월에 개정된 고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러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최소한의 기술을 정한다고 되어 있고 구체적인 기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바로 그런 대법원 판결로 인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거기에 맞추고 또 이 개인정보보호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철저히 보호되도록 기업이 좀 더 노력해 줄 것을 원하는 그런 뜻이 담겨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 취지는 아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달리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기주 위원님께서 확인해 보실 것이 있으신 것 같은데 먼저 이기주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그것이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저는 오늘 사무처 그리고 KISA 그리고 피심인 측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쟁점이 뭐다라는 것이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회의 시작한지 두 시간이 됐는데 오늘 여기에서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하시지만 가능하시면 이 정도에서 저희도 한번 다시 검토하고 그리고 서로가 이제 쟁점이 뭔지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인 이해가 되고 있는지,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오늘 많이 확인이 됐을 것 같아서 며칠이라도 시간을 두고 저희 사무처와 KISA는 나중에 또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 피심인 측에서도 또 나름 이야기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번 논의를 이어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오늘 문답 안 하고요?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주시지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제가 지상파방송 심사위원회에 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눴고 쟁점, 문제점이 뭔지도 이해는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산업, 디지털산업의 문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로서 따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피심인 측에서 말씀하신 여러 말씀 중에서 저도 작년, 제작년에 했던 이야기인데 해킹은 법을 앞서갑니다. 해킹기술이 법제를 앞서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부 당국이 해커들을 제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이런 것을 일일이 다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인터파크가 법에 어긋나게 하지는 않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자 사이에 상당한 모순, 상충이 있습니다. 그것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규명하기보다는 하여튼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인터파크 개인정보 얼마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지요? 2,050만 건, 2,051만 건? 2,050만건 넘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전자상거래...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보유하고 있는, 활용되는 개인정보는 약 1,000만명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1년 지나면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휴면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휴면까지를 모두 다 합치면 2,700만건이지만 실제 개인정보라고 가지고 있는 것이 1,000만 건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휴면된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래도 보유는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보유는 하고 있지만 ID하고 암호화된 패스워드 외에 다른 것들은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 김재홍 부위원장

- 좌우지간 언젠가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완전히 별도의 시스템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보관하고 있는데 사용할 수 없는 것을 폐기·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휴면이었던 사람이 다시 와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 김재홍 부위원장

- 본인이 희망하면?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예,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래서 말하자면 인터넷쇼핑몰과 여행사 티켓 판매대행 같은 전문적인 인터넷 상거래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터져서 정말 유출됐는지 확증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너무 기술 전문적으로 높아서 그랬는지 정말 그것은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일단 저희로서는 유출사고가 났다고 보고 지금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ID, 비밀번호, 물론 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런 9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보고 지금 이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저도 이 회사에 어찌면 가입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사 티켓을 구입 대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2,0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 얼마나 개인정보보호에 의무감을 갖고 책임의식을 갖고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했다는 말씀을 제가 정말 이 자리에 탄핵하

기 위해서 요새 탄핵이 유행어이긴 합니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이상한 인터넷강국이다' 하는 말이 있지요. 불균형적으로 발전한 디지털 강국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업하고 돈은 벌면서 인터넷 윤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의식과 책임의식은 너무 빈약한 불균형 성장국가라는 말씀입니다. 유럽의 칼럼리스트들이 많이 쓴 이야기입니다. 저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인터넷사업자들과 이용자와 이렇게 이루어지는 시장의 문제입니다. 그 시장에 생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장의 천적이려면 해커가 천적이겠지요. 인터넷 기술도 나날이 발전합니다. 해커의 해킹기술도 발전합니다. 그러면 사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천적을 예방하고 방어할 수 있는 방어기술도 개발하고 대응하는 것이 사업자 측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법제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가이드라인 말씀하셨는데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에 일일이 다 적시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을 규정하고 그러나 다른 것은 해킹기술에 대응해서 그 생태계에 적응하는 것은 사업자의 책임입니다. 포괄적인 책임입니다. 일반 형법에서는 포괄적인 책임론이 위헌일지 모르지만 디지털 업계나 디지털 학계에서는 지금 다 법제화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인 책임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책임의식을 가지고 경영해 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그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관련해서 최고책임자가 임원급입니까, 부장급입니까, 과장급입니까? 일반 관리직 시스템으로 봐서...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구창환 전무라고 CTO를 하고 있는 전무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CTO 전무입니까?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기술 쪽을 총괄하는 CTO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다른 여러 업무를 겸무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라인이 CTO가 최종적 책임자이고 그 밑에 개발조직들이 있고 보안과 관련되어서 시스템 전체를 관장하는 윤혜정 실장이 그 밑이고 그 밑에 보안팀이 별도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이용을 담당하는 최고의 책임자는 실장이신 윤 실장이십니까?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CTO인 구창환 전무가 책임자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다른 것도 다 겸직하는 것이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CTO 이야기하지 말고 CISO나 CPO나 누구 없습니까?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ISO를 CTO가 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개인정보 부서...

○ 최성준 위원장

- 잠깐만요. 대답을 듣고...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CISO는 구창환 전무님께서 하시고 CTO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얼마나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이용에 비중을 두느냐 하는 것을 묻는 질문인데 대개 다, 대개는 아니지만 대체로 겸직시키고 겸무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책임의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팀의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지금 보안팀 전체 보안 인력만 12명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12명, 모자라서 외주업체에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아웃소싱 하는 것도 많지요?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보안 관제는 전문회사에서 받고 있고, 일부 스팟성으로 주기적으로 보안전문업체에서 추가적인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저희가 저희 인력으로도 기본적인 운영은 가능하지만 추가적으로 보안 쪽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 회사 개인정보팀의 전문성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답변할지 제가 검증할 방법이 없고, 외주업체에 위탁 주는 것 괜찮습니까? 건물, 시설, 장비에 대해서 말하자면 오프라인 아날로그 건물장비에 대해서 외주업체에 주는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를 외주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저희는 직접 운영하고 있고 직접 운영하는 것 외에 또 관제와 관련해서 계약을 맺어서 별도로 또 받는 것이 추가로 있는 형태이지, 보안 자체는 저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도 제가 일일이 다 어디까지 하는가를 따져 물을 시간이 안 되는데 제 말씀은 건물, 시설, 장비, 보안 경비하는 것처럼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사용을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아닙니까?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더군다나 인터넷사업체이면 그만큼 가입자 회원 언젠가 구매자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그 개인정보보호에 회사가 사력을 집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책임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기업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정법에 얼마나 어긋났느냐, 우리는 어긋나지 않게 했다, 다 했는데 뚫렸다? 제가 이번에 뚫린 지나갔다는 해킹 기술의 수준은 묻지 않겠습니까. 고난도냐, 저난도냐 너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전문가들 다 계십니다만 정책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거기에서 다 대응하고 적용해야 인터넷사업자로서 생태계에 책임 있게 살아남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 해커가 하나 감염시킨 1명의 사원, 그 사원은 개인정보보호와는 아무 관련 없는 사원이다. 그 사원 담당 업무가 무엇입니까?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여행서비스 기획팀장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면 물론 개인정보 관리인가는 안 받은 직원이었지만 회사 내부의 여러 정보나 그 사원 인적정보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은 없는 것입니까?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예, 그렇지 않습니다. IT 쪽이 아니라 문과 쪽 업무를 하는...

○ 김재홍 부위원장

- 3일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했다는 것인데 직원 PC에 악성코드를 최초로 감염시켜서 심었고, 그다음에 다수 단말기에 악성코드를 확산시켰고 그래서 내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 사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의식이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사나흘 동안 회사 내에 숨어든 그 해커 악성코드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더 자세한 범 위반이나 이런 문제는 또 질

문이 나오겠습니까만 저는 실정법 위반, 이것 디지털 인터넷 업계에서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실정법에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면탈한다든가 우리는 그것을 지켰는데 이렇게 해커에 뚫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가지고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면 무한책임을 갖고서 관리하고 이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해킹의 전·후로 구분해서 본다면 전에 사전 조치를 제대로 했느냐 하는 부분이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하신 것을 보면 최대 접속시간 제한 그 규정을 잘 지켰다. 그래서 10분 경과 시 계정이 차단된다. 그래서 해커가 침입할 수 없게 되어 있고, 2시간 이상 접속 시간도 제한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도 뚫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규명하려면 로그인 기록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포매팅 하고 다 클렌징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 기록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을 들어보면 경찰과 상의해서 경찰이 초기에 다 모든 자료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 추가 2차 공격이 우려되기 때문에 포맷을 해 버리자,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재홍 부위원장 퇴장)

그러면 그 부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경찰의 담당자와 의논을 해서 추가 공격이 우려되니까 클렌징을 빨리, 포매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로그인 기록이 제출이 전혀 안 돼서 심지어는 문제가 됐던 B사원의 PC가 노후된 PC였기 때문에 바꿔 줬다, 하필이면 그때 해당 유출된 통로가 됐던 그 PC가 왜 대체가 됐느냐? 그러면 노후장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원이 몇 명입니까? 인터파크에 PC가 몇 대 있지요?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1,500여대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1,500여대의 PC 장비가 있다면 아무래도 단체 구입을 하고 단계적으로 몇 년이 지나면 노후장비로 분류가 되어서 또 단체로 폐기하고 그런 기록을 쥘 보십시오.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예, 알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기록을 은폐하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이 해당 B사원의

PC만 몰래 포맷했다 이런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그런 기록을 주십시오.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게 해서 소명을 해야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5월 중순경에 직원 B라고 하지요.

○ 김석진 상임위원

- 5월 24일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 컴퓨터를 교체했지요?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때 인터파크 내에서 컴퓨터 몇 대가 다 같이 교체됐습니까?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저희가 컴퓨터를 한꺼번에 교체하지 않고, 내부 프로세스는 PC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물론 어디나 다 그렇지요.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 무렵에는 1대가 교체됐습니까?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그 무렵에 1대가 아니라 매달 상당량의 PC들이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B의 컴퓨터는 무슨 이유로 교체됐습니까?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B의 컴퓨터도 노후되어서 이 친구가 인사 쪽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과장입니다. 그런데 많은 작업들을 하는데 속도도 많이 느려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교체요청이 있어서 교체를 해준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통상적으로 교체하려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 지나갔고 또 내구연한이 다 안 됐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있을 때 교체를 한다, 그런 내부 규정도 있을 것이고….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예,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거기에 맞춰서 교체가 됐을 것 아닙니까?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자료를 내주십시오.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예, 제출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과연 이 개인정보가 해킹에 의해서 나가서 외부로 유출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느냐, 이용이 되고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해명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활용이 됐든 증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파일 압축이 풀려서 개인정보가 전혀 새어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 근거로서 압축파일이 12.8G 용량이 9.4G밖에 안 나갔는데 전체가 나가서 풀리지 않으면 안 풀린다, 왜냐하면 이것은 해독 암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개인의 파일 하나하나를 풀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이 아까 이야기하지만 16개 파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패키지로 16개가 다 묶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박준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그루핑이 되어서 4블록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16개가 4개….

○ 박준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원래 전체 6개 압축파일이었고 이것이 16개로 쪼개졌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그중에 16개 어느 한 묶음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가서 기술적으로 압축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소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상세하게 그 부분도 추가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그러면 그 부분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그래서 데이터 내용을 볼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압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해서 소명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해커가 협박을 할 때 동영상을 띄우는 화면이 데이터베이스를 압축해서 풀어서 실행한 화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라클에서도 자문을 받아보면 배열순서가 똑같다면 그것은 그렇게 나올 수 없는 화면이라는 것 아닙니까?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그러면 아직도 그 당시에 해커가 인터파크에 자유롭게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해킹한 화면을 띄워 놓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행한 화면이 아니고 우리 것을 들어와서 보고 있는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때까지도 방화벽이 아직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그 시점에 촬영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월쯤에….

○ 김석진 상임위원

- 실시간 리얼타임이 아니고?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예, 5월쯤에 들어가서 우리 개인정보가 있는 서버 쪽이 침해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때 그것을 볼 때 처음에 DB 카운팅을 한번 해 보고 했던 화면을 그때 캡처 해 뒀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 해커가 원래 6개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을 6개 파일을 한꺼번에 가져가면 우리 침입탐지시스템에도 다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일 용량이 작게 16개로 해커가 쪼개서 웹서버에 일단 저장해 둡니다. 16개로 쪼개서 하나씩 가지고 나가려고 쪼개 놓은 파일의 총량이 12.8G인데 실제로 방화벽에서 나간 것은 9.4G만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만 나간 것이고 사실 이것 말고 또 다른 것이 나갔는지, 이것은 안 나가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조사결과라는 말씀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가 궁금하나 하면 이렇게 해커가 그 당시가 뒀든 리얼타임이건 간에 인터파크에 수시로 들락날락 자유자재로 들어와서 그것을 계속 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예, 맞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을 캡처해서 또 협박하는 데도 동영상으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자유자재로 들락날락했다면….

○ 최성준 위원장

- 들락날락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은 모르는데….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5월에 해킹을 당할 때는 자유롭게….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어디까지나 피심인의 주장일 뿐이고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소명이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있는 부분은 몇 차례나 어떻게 뚫렸고 로그인 기록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기록이 없습니다. 로그인 기록을 제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맷되어서 더 이상 없다는 것,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해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으로 이야기하면 개인정보가 전혀 유출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증거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고,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좀 제가 파악이 되는데 전과 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분명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고 또 사후에 지연보고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증거 인멸을 위해서 포맷을 하고 클렌징을 짝 대대적으로 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도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저희들에게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징금 부과기준도 법리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그것도 다 단정해서 예단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틀리면 또 그것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그것도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소명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것 더 확인하실 것 없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궁금한 것이 많지만 나중에 필요하면 조사했던 조사관님들 통해서 여쭙 보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것이 실장님, 사실확인서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거기에 기술된 내용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최초의 '우리가족' 코드가 들어와서 PC가 장악 당한 이모 팀장님, 그분이 사용하다가 이상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어디에 신고한 것입니까? 정보보안팀에 한 것입니까?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그렇지 않고 그때 그 친구가 사내에 있는 바이러스 백신으로 1차 확인을 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지요.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거기에서 검출이 안 됐고, 그다음에 네이버에 있는 바이러스 백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 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동생이 IT 쪽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동생에게는 이야기해서 동생이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궁금한 것이 5월 6일에 안랩에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그 신고를 동생이 한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그 뒤로 어떤 조치를 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침입 여부라든가 그다음에 오염이 된 것,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트래픽이 발생했습니다. 외부로 유출된 것이 9.4G입니다. 9.4G의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그렇지 않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안랩 정도에서 점검했다면, 침입여부라든가 그것은 놓칠 수 있다고 하지만 9.4G나 되는 이런 큰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이상을 포착했다면 역으로 다시 추적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떤 조치를 한 것입니까? 안랩에 신고하고 점검도 했습니까? 이 지점이 이해가 안 됩니다.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랩에 신고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이모 팀장 동생이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알았던 상황은 아닙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회사 PC이지 않습니까?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회사 PC에 악성코드가 감염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바이러스 백신에서 검출이 전혀 안 됐거든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안랩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생이 됐든 누가 됐든.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이 안랩에서 어떤 검사를 하고 조치를 했습니까?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안랩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저희 회사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회사와 별개로 한 것입니까?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예.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처음에 이지혜 팀장 PC가 감염되는데 그 경로가 이지혜 팀장이 네이버 메일이 해킹됩니다. 이 네이버 메일이 해킹되는 방식이 네이버 메일을...

○ 고삼석 상임위원

-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회사하고 무관하게 이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그 동생은 우리 회사와 무관한 다른 회사에, 이 동생이 이지혜 팀장한테 동생 이름으로 이지혜 팀장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그 동생이라는 사람은 다른 회사에, 인터파크와 상관이 없는...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니까 이모 팀장은 동생하고만 상의하고 동생이 안랩에 신고하고 회사에는 전혀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이지요?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바이러스 백신 가지고 체크해 보고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신고를 했으면 당연히 그 시기에 우리가 인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직원 보안교육을 1년에 정기적으로 두 차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과 유사하게 메일로 악성코드가 유입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악성코드 모의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파일이 이상하거나 할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지혜 팀장이 악성코드가 있다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상이 있었다고 생각했으면 저희 보안팀에 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악성코드 모의훈련 할 때 문제가 있거나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보안팀에 신고하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명자료 5페이지에 나온 것을 보면 제일 밑입니

다. 일부 직원 DB 장기 접속 문제 두 번째에 보면 '해킹과 전혀 무관한 직원 1인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우리 조사관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DB서버 관리자 인 박모 대리 PC를 경유해서 해킹이 이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DB도 자료 유출 근거도 보면 그렇게 된 것이고...

○ 박준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고개를 끄덕이며)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박모 대리가 아까 말씀드린 최장 7일 정도 접속상태를 유지한 그 담당자지요? 책임자지요?

○ 황선철 개인정보보호조사팀 사무관

- 지금 박모 대리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7일까지 STG Client 접속서버에 그 프로그램에 접속되어 있었던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두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은 또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인 문모 씨가 별도의 2시간 이상의 명령어도 없이 12시간 이상 HQDB에 접속한 것이 19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터파크 측에 이 명령어가 끊기고 나서 2시간 후에 자동 로그화 아웃된 기록이 있으면 그것을 소명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자료 제출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대상은 다르지만 특정 직원 DB서버 관리자가 장시간 접속상태를 유지해 놓고 그 접속 제한 조치를 실행하지 않은 것, 그것은 해킹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니까 다른 것입니다. 대리인이 설명한 내용, 그 사례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바로 DB서버 관리자가 장기간 동안 그 접속을 차단하지 않고 방치해 둬으로써 그 해커가 침입할 수 있는 루트를 제공했다, 이것은 우리 쪽 입장입니다.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이지요?

○ 박준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예, 여기와 나와 있는 내용하고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것만 보면 전혀 무관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박준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예.

○ 최성준 위원장

-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지요. 지금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최대 접속 시간 제한을 2시간으로 설정해 놨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2시간이

지나서 다시 연결은 되어 있는데 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시간제한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2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DB에 접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박준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이 부분은 2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접속이 끊어지는 것이고...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다시 접속하려면...

○ 박준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다시 접속을 하려면, 예컨대 PC를 아예 닫았다가 다시 연다면...

○ 최성준 위원장

- PC를 다시 연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ID와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해야지 다시 연결되는 것
입니까?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까?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운영해 온 흔적이 전혀 없다고 해서 여쭙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해 온 흔적이
있으면 그 흔적을 제출하십시오.

○ 이상규 ㈜인터파크 사장

-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희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제출을
못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있는 것처럼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내주십시
오. 그다음에 결국에는 외부 유출의 명백한 증거가,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습니다. 아까 이야
기한 직원 B의 컴퓨터가 폐기가 되어서, 그 직원 B의 컴퓨터는 어디에서 폐기합니까? 만약
에 노후화되어서 하면...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저희 PC 담당하는 팀이 따로 있고, 그 팀에서 디스크 같은 경우 전체 구멍을 뚫어서 천공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중요한...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좋은데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혹시 7월경 그 당시에, PC를 교체한 5월부터 한달 좀 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두 달까지 안 되고, 그때 PC의 하드디스크가 어떻게 천공이 되어서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어디에 있었습니까?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그것은 천공해서 저희가 별도 폐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분량이 되면 주기적으로 모아서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버렸는지 그런 기록이 남아있습니까?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예,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기록이 있으면 그 기록을 내주십시오.

○ 윤혜정 ㈜인터파크 IT지원실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유출에 대한 증거가 부재하다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직원 B의 컴퓨터가 없으니까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정확한 경로는 저희도 사실은 밝히기가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웹서버에 있는 16개로 나누어져 있던 백업파일이 직원 A의 컴퓨터로 전송된 것은 남아있지요?

○ 박준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예, 이 사이에도 방화벽이 있는데 그 방화벽 로그에 전송된 트래픽 기록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남아있지요? 그다음에 바로 그때 웹서버에서 직원 A의 컴퓨터로 갈 때 그다음에 A와 지금 노후화되어서 폐기됐다는 B의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었지요?

○ 박준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사내 전 PC들은 다….

○ 최성준 위원장

- 아니, 사내 전 PC가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둘이 서로 자료를 주고받는 그것이 남아있지요?

○ 박준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그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 최성준 위원장

- 인터넷진흥원에서 오신 분 말씀해 주시지요.

○ 김광연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 분석했을 때 실제 이벤트로그에는 계속 접속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접속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내의 모든 컴퓨터는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 김광연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 그것은 아닙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것이 아니고 접속이 되어 있었다?

○ 김광연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 원격데스크톱….

○ 박준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그것은 죄송한데 하나 여쭙 볼 것은 이벤트로그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광연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 원격데스크톱….

- 박준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원격데스크톱 연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김광연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 예.
- 박준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그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서 실제로 데이터가...
- 김광연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 그것도 어떻게 됐든 로그이지 않습니까? 파일들이 왔다 갔다 했다고 입증하기는 어렵겠지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연결되어 있었는데 보통 때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시간대에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 박준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이것은 해커가 연결한 것이 저희도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여쭙 보는 것입니다.
- 박준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노후화된 폐기된 컴퓨터에서 외부 PC망으로, 하여간 트래픽이 9.4G 만큼 나간 것도 맞지요?
- 박준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그때 해커가 그렇게 연결했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이 사이에 직원 A와 B 사이에 데이터가 오간 흔적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아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 박준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예,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마치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완벽한 연결고리는 복원은 못했지만 그 정도 상황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박준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예.

○ 최성준 위원장

- 마지막으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과징금 기준으로 위반행위와 관련 매출액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과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반행위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과 관련된 매출액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안 보고 법에 되어 있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라는 것은 제64조의3제1항제1호부터 8호까지 쭉 이런 위반행위가 있지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제6호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이 위반행위, 이것과 관련된 매출액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것이라면 그 법리적인 근거라든지 설명을 나중에 어차피 내셔야 하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 박준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간단히 말씀하시려면 말씀하시고요.

○ 김광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저희가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과징금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1항을 보시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해킹에 의해서 이런 사고가 나서 이런 것을 위반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말하는 제6호에서 보시면 제28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보호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것 더 하실 것이 없으시면 지금 위원님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더 확인해서 제출하시겠다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제출을 요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가 제출된 것을 보고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아까 다른 것은 몰라도 경찰과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경찰과 협의해 봐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딱 못 박기는 어려운 것 같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경찰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 김광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에서 신고해서 다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관한 흔적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싶다고 말씀하셔서요.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저희가 다 찾아왔고 그다음에 저희도 경찰이 복사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조사했지 않습니까? 찾아왔고, 그다음에 인터파크 쪽에 있으면 제출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으나, 못 찾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려고요?

○ 박준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말씀하신 것은 경찰과 협의해서 저희가 이런 PC 클렌징 같은 것을 다 실시한 것이다라는 내용을 경찰 쪽과 협의해서 경찰 쪽에서 말하자면 디렉션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로그기록을 경찰로 넘어간 것에서 찾아보려는 노력을 왜 안 했느냐? 그냥 경찰에 넘기고 말았느냐?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잘 알 테니까 다시 찾아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을 찾아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에 이미 찾아보려고 노력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 최성준 위원장

- 아닙니까? 하여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 김석진 상임위원

- 필요하면 하십시오. 필요하면 하시고...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생각에는 자료제출 시기는 그냥 며칠 내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며칠 내 못 내는 것은 또 언제까지 내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못 내겠다고 하든지 그러면 되는 것이지, 어느 한 건에 대해 불확정성 때문에, 그러면 좀 곤란하지요.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하루 이틀 된 사건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간에 사정이 있으면 다시 또 저희와 논의하시고 일단 이번 주말까지 제출해 주시지요. 너무 빠릅니까?

○ 박준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일주일만 더 주시면 충실히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해 보고 또 하시지요.

○ 최성준 위원장

- 일단 이번 주말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해 보시지요. 그러고서 사정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또 더 추가로 받을 것인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오랜 시간 동안 설명하시고 또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견진술인 퇴장)

지금 들으신 것처럼 피심인 측에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것도 있고 저희가 그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사고 발생원인 그다음에 그로 인한 시정조치(안)에 대해서도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검토한 이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무처에서, 오늘 쪽 종합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심인 측에서 자료가 제출되는 것을 기다렸다, 이것이 아니고 오늘 2시간 반 동안 쪽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팩트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쪽 리스트업을 해서 기존에 사무처 의견하고 피심인 의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파인딩 하려고 하지 말고 정리를 다시 해서 그것은 위원장님이 어떻게 운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쪽에서 자료가 오면 저희들이 다시 모여서 한번 전반적으로 리뷰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밝혀진 것은 미리 다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번 주말까지 자료 가지고 오는 부분은 거기에 다시 채워 넣어서 저희들이 당연히 다시 논의하고 그다음에 회의에서 의결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서 화장실도 필요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5분만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 42분 정회 】

【 16시 51분 속개 】

○ 최성준 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등 제공관련 이용자이익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6-63-234 ~ 242)**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다>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등 제공관련 이용자이익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께서 조사결과와 위법성 판단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먼저 의결주문은 ‘방송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케이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현대에이치씨엔, 씨엠비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사의 배경은 방송통신 결합경품 활성화에 따라 과도한 경품 등 제공으로 과열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서 경품 및 약관의 요금감면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이용자이익 침해행위가 인정되어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은 통신 4사와 5대 종합유선방송사 등 총 9개 사업자의 15개 법인을 대상

으로 작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전체 가입자 292만 6,000여명을 전수조사 하였습니다. 조사결과입니다. 먼저 전체 조사대상사업자가 '경품 등'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평균 위반금액은 107,000원 평균 위반율은 39.2%로 나타났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부 조사대상사업자는 2종 결합 이용자에게 최대 442,000원까지 초과하여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경품 등'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금과 물품은 73,000원, 상품권은 20,000원, 약관의 요금감면은 14,000원으로서 현금·물품을 가장 많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사업자의 경우 5쪽의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위반율은 LGU+가 그다음에 초과지급액은 SKT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품별로 살펴보면 2종 결합상품의 초과지급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6쪽에 보시면 한편 IPTV를 포함한 결합상품의 위반 정도가 포함하지 않은 경우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대 MSO의 경우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티브로드가 위반율 및 초과지급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품별로 살펴보면 2종 결합상품의 초과지급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케이블TV를 포함한 결합상품의 위반 정도가 포함하지 않은 경우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통신 4사 및 5대 MSO가 '경품 등'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제공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4] 제5호 마목의 1) 위반에 해당되고 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관계자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는데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기 전에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LGU+ 측 관계자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의견진술인 입장)

어서 오십시오. 참석하신 분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송구영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 송구영 LGU+ PS본부 홈마켓부문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김규태 상무님!

○ 김규태 LGU+ 상무보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김앤장법률사무소 이경구 변호사님!

○ 이경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예.

○ 최성준 위원장

- 앉으시지요. LGU+의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규태 LGU+ 상무보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미리 제출이 된 PPT 자료를 위주로 설명하실 것입니까?

○ 김규태 LGU+ 상무보

- 제가 모두발언을 드리고 그리고 법률대리인께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먼저 모두발언을 하십시오.

○ 김규태 LGU+ 상무보

-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 상임위원님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진술하게 된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결합상품 가입자 모집과정에서 과다 경품 제공 및 약관의 요금감면 등의 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그동안 결합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나름 노력하여 왔으나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만, 유독 정도 및 제재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 앞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을 감안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결합시장은 2010년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재판매 이후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2014년 말 기준으로 전체 결합상품 가입자의 41.4%가 이동전화에 포함된 결합상품을 사용할 정도로 결합상품의 중심이 이동전화로 급격하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유무선 결합상품은 기본적으로 이동전화 회선 수가 많을수록 할인혜택이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회사와 같이 이동전화가입자가 적은 후발사업자는 할인혜택의 차이를 경품으로 보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후발사업자가 서비스 개선노력을 게을리 해서 고객으로부터 외면 받는다면 저희도 이해할 수 있겠으나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 선발사업자 대비 제약을 받는 구조로 인해 경품으로밖에 경쟁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현행 경품 기준 및 결합상품 규제도 그러한 상황이 고려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의견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니 회사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하시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구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저희가 사전에 제출된 자료를 봤더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품기준에 대해서 당연히 설명하고 계시지만 그에 앞서

서 시장 지배력 또 공정경쟁 환경 이런 것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가능하면 그런 일반적인 설명은 저희가 자료를 보면 되니까 생략하시고 결합판매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 위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경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인쇄물로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급적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분은 생략하고 4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설명드렸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결합판매 특성으로 인한 경쟁환경의 변화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알려진 것처럼 2000년대 후반 이후에 국내 결합판매 시장의 경쟁환경이 급속히 변화했습니다. 이동전화 결합상품의 확대로 인해서 그것이 또 이동전화 회선수에 따른 결합요금 할인 구조 때문에 쏠림현상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SKT의 SKB 상품의 재판매 그리고 IPTV 판매로 인해서 시장 경쟁환경에 왜곡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그 옆에 <표>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SK계열의 점유율 추이를 보시면 SKT의 유무선 결합상품의 점유율이 결국은 이동통신사 SKT 이동통신의 점유율로 수렴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SKB의 초고속 점유율 그 자체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SKT의 초고속 재판매 점유율에 의해서 떠받혀지는 그러한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밖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초고속인터넷의 비경쟁지역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경품규제사항의 불평등이 초래한다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5쪽입니다. 경쟁환경의 변화와 결합판매 규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위법여부의 판단규정인데 이 부분을 시정조치(안)에는 시행령 [별표4] 5.마목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이러한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해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을 규제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전기통신서비스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단품을 위주로 규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별표4] 5.마목을 보시면 결합판매에 관해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결합판매의 과정에서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질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별도 규제를 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시장지배력의 전이 등 공정경쟁 저해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 시장지배력의 전이 그리고 공정경쟁의 저해효과 이 부분을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6쪽입니다. 시장지배력의 전이 등 공정경쟁 저해에 과연 해당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관해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동전화 다회선 결합할인과 관련한 경품제공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이동전화 다회선 결합상품을 보면 이동전화 1위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평균 이동전화 회선수가 SKT 2.4회 그리고 LGU+가 1.5회로 회선수 자체에서 0.9 정도의 격차, 1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통상적인 결합상품의 경우에 SKT는 보통 3회선이 결합되어서 83만원 정도의 혜택을 보는 구조로 되어 있고 LGU+는 2회선 결합으로 인해서 그 절반도 안 되는 39만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혜택을 적게 줄 수밖에 없는 사업자로서 어떤 경쟁, 또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건 추가적인 이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경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확

일적인 경품기준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을 이 점에서도 한번 평가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7쪽입니다. 그다음에 비경쟁지역과 관련한 위반율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초고속인터넷 비경쟁지역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경쟁지역이 KT의 경우에 30% 정도로 보고 있고 나머지 70%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3사가 경쟁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경쟁지역에서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위반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도 위반율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결과가 됩니다. 전부 50%를 위반했다 이렇게 보더라도 LGU+의 위반율은 그대로 50%에 머무르게 되는 반면에 KT의 위반율은 35%로 저하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선에 있어서 1위와 후발사업자 모두 경쟁지역에서만 치열하게 경쟁 중인 그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위법성 평가 시에는 경쟁지역의 위반율을 따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8쪽을 보시겠습니다. 그 이외 SKT가 판매한 IPTV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전화 1위 사업자인 SKT가 자사 유통망을 통해서 자회사 IPTV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경품 조사에 있어서는 SKT가 판매한 IPTV의 실적이 SKB의 위반율 산정에 그대로 반영되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동전화 회선중심의 할인혜택으로 인해서 위반율이 그 부분은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판매실적을 SKB의 판매실적으로 포함시켜서 산정하게 된다면 SKB의 위반율 그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합시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1위 사업자의 판매 분과 자회사 판매 분의 위반수준을 별도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다음 경품기준 적용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시정조치(안)는 '결합상품 제도개선(안)' 2015년 8월 6일 만들어진 것인데 여기에서 제시한 경품의 상한기준을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의 단품 19만원, DPS 22만원, TPS 25만원의 기준에다가 QPS의 경우에 3만원 정도를 추가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28만원의 경품 상한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개선(안)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결합상품 제도개선(안)' 이것이 상위법에 어떤 위임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한 내부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법규성이나 어떤 제3자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자체만 가지고 어떤 위법성의 판단을 한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에 근거해서 어떤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법률적 근거가 없이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이 기준 자체가 2015년 8월 6일 발표가 됐는데 실제 이 조사대상은 1월부터 9월 사이에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소급적용하게 된다면 이 기준 자체가 행위규범으로서 전혀 작용하지 못한 영역을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범자의 어떤 예측가능성을 저해해서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동전화 결합상품의 기준, 이 부분은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서 최초로 제시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종전의 부분까지 일률적으로 평가가 되고 기준이 적용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품기준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현재의 기준 2012년의 경품기준을 원용한 것입니다. 이것도 변천내역을 보면 2011년의 기준에서 일률적으로 3만원을 인상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동전화 결합상품의

확산 등으로 인해서 그 4년 동안 결합시장의 환경은 많이 변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종전 2012년도 4년 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경품기준 설정 근거 그 자체가 '인당 예상이익' 그리고 '상호보조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지금도 타당한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상호보조 논리'에 관련에 관해서는 사업자가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평균 예상이익 초과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반드시 이용자 차별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동전화의 경우에 인당 예상이익이나 매출액 20%, 이것이 불과 3만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지나친 의제가 아닌가 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 수십 만원 정도의 경품 기준의 설정이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러한 점에서도 경품 기준의 합리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1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이와 같은 경품기준을 적용하는 것, 그 자체가 과연 합리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의 인식과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경품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러한 업계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율규제기준을 만들었는데 이것만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합시장의 이러한 경쟁상황을 일부 반영을 해서 차등적으로 리베이트 별점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신 4사가 자율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데 PPS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각각 7만원, 9만원 정도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계가 스스로 확실히 기준이 공정한 경쟁으로 이어질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그런데 이 사건 경품기준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확실히 똑같이 적용해서 그 위반율을 따져야 된다는 부분에 근본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과징금 산정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3항은 과징금 부과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그리고 위반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위임을 받아서 고시가 제정이 됐는데 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조금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고시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공정위 과징금 고시도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피해규모, 취득한 경제적 이익, 평균 매출액, 관련매출액의 절대규모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단순히 위반한 비율이 어느 정도냐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아가서 실제 피해의 규모가 전체 규모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반율이 같다, 내지는 위반율이 비슷하다고 이렇게 볼 때에도 이동전화 1위 사업자의 자회사 부당지원이나 지배력 전이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율만으로 중대성의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반율에 관해서는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미 위반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요소로 이 부분이 다시 고려가 되거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가 된다면 결국은 과징금이 중복되어서 가중되는 그러한 부당한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반율만으로 부과기준을 판단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의 영향력이 가장 작은 열위의 사업자에게만 과중한 제재가 발생해서 결국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11년 그리고 2012년 심결에서 각각

1%나 0.25%의 단일 부과기준율을 적용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비례의 원칙'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위반율뿐만 아니라 그리고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6쪽입니다. 결합판매 시장의 경쟁 환경을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경품으로밖에 대응할 수 없는 이런 결합시장의 구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회사의 경우에 위반행위 그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더라는 점을 통계로 아실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 대상기간 동안 회사의 신규 그리고 순증실적을 이렇게 보시면 기존의 시장점유율을 겨우 유지하는 그러한 정도에 그쳤더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KT나 SKT 상당히 신규나 순증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시에는 위반율뿐만 아니라 그 이외 여러 가지 사정, 그중에 결합판매 시장의 경쟁환경을 특별히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결합판매의 경우에 시장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만약에 획일적인 경품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고 제재 수준을 적용한다면 결합시장에서의 시장 구조나 경쟁의 왜곡을 초래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결국 시행령 [별표4] 5.바목에 따라서 결합판매에서는 "시장지배력의 전이 등 공정경쟁 저해효과를 고려"해서 시장구조적 문제점을 반영한 경품 제공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새롭게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을 저희가 의견을 드리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러한 말씀드리면서 의견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거나 또는 질문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다른 특별한 것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쭙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6페이지 평균 이동전화 회선수라는 것이 가구당 회선수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김규태 LGU+ 상무보

- 예. 유선상품 하나당 모바일 회선수가 몇 개씩 붙어 있느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SKT의 경우에는 이동전화에 가족간의 결합이 많은데 LGU+나 KT는 훨씬 더 적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규태 LGU+ 상무보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원인은 뭡니까? 왜 이렇게 가구라는 것이 꼭 LGU+의 유선상품을 가입한 가구라고 해서 가구원수가 더 적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의아스러운데 혹시 그 원인을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 송구영 LGU+ PS본부 홈마켓부문장

-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결합상품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어떤 차이에 기인하는 것입니까?

○ 송구영 LGU+ PS본부 홈마켓부문장

- SKT 같은 경우 장기고객할인 형태로 해서 모바일 고객들을 가족들의 전체 사용하는 연수나 금액에 따라서 할인해 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랫동안 가족들끼리 묶어두는 형태로 해서 고착화하는 상품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의 결합할인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수익성이나 규모 측면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결합할인수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시장에서 브랜드밸류에 대한 가치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말씀하시는 부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SKT의 경우나 KT나 LGU+의 경우에 SKT는 꼭 한 가구의 구성원이 다 같은 것을 가입하고 LGU+는 결국에는 가구원수가 똑같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은 다른 것을 가입하고 그런다는 것이 선뜻 잘 납득이 안 돼서 그래서 여쭙 봤습니다.

○ 김규태 LGU+ 상무보

- 그것은 가구수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기본적으로 이동전화 시장에 있어서 MS가 5:3:2의 구조를 가지고 있듯이 이것이 많은 사람을 묶을 수 있는 가능성이 SKT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SKT의 가입자가 한 가구당 가구원수가 더 많을 것 같다?

○ 김규태 LGU+ 상무보

- 그런 가구가 많다, 많은 회선을 결합할 수 있는 가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결국에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가구원수가 많으니까 회선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송구영 LGU+ PS본부 홈마켓부문장

- 기본적으로 모바일 결합자가 많다는 것에 기인해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11페이지에 '이동전화의 경우 인당예상이익이나 매출액의 20%로 산정하면 수십 만원의 경품기준 설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고려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결합상품의 경우 이동전화의 경우에는 지원금 그다음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선택할인, 그것은 이 경품하고는 별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동전화의 경우에 인당예상이익이나 이렇게 자꾸 접근하는 것에는 그것이 고려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16페이지에 조사대상 기간 통신사업자간 실적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신규, 또는 순증가입자를 보는 것입니까? 결합상품도 다양한 결합상품이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개별상품도 있을 수가 있는데 무엇이 가입자가 신규와 순증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 김규태 LGU+ 상무보

- 기본적으로 이 숫자는 초고속인터넷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초고속인터넷을?

○ 김규태 LGU+ 상무보

- 초고속인터넷은 결합에 항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초고속인터넷을 기준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 더 말씀하실 것은 없으시고요?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저희가 이미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토한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다시 한 번 또 재고해 봐야 할 그런 내용들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법리 검토 또 적용하여야 할 규정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 안 하실 것처럼...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늘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새로운 것들 제출해 주신 것도 있어서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작년 8월에 방통위가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QPS를 추가해서 발표했다고 하고 실태점검 들어간 것이 8월 1일인데 피심인 측에서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중의 하나가 이렇게 경품 허용기준에 대한 그쪽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발표할 때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그 전의 과정이나 아니면 안을 발표한 이후에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주장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사무처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 김규태 LGU+ 상무보

- 공식적인 의견제시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경품으로 규제를 하고 계신데 전단에 결합상품에 있어서의 경쟁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경품을 규제하시면 저희가 잘 지킬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경쟁하기 힘들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드린 적은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별표4] 5.바목 이것이 시행이 언제 됐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이번에 개정되는...

○ 최성준 위원장

- 여기 PPT에 바목이 나와 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현행 규정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아마 제가 알기로는 5년 전쯤에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사무처에 질문인데 이 바목에 대한 적용의 필요성 내지 적용여부 거기에 대해서 한번...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아까 제가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봐야겠다고 한 것 중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용자정책국에서 바목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이것은 저희들이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제출하겠습니다.

○ 김재철 통신시장조사과장

- 그동안 경품기준에는 바목은 적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과거에 적용한 적이 없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요.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시장점유율이라든가 거기에 기반한 회사의 규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단순 경품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게 생각한다 이것이 주장의 요지이지 않습니까?

○ 송구영 LGU+ PS본부 홈마켓부문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우리도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쪽 의견을 내셨지 않습니까? 이 기준대로 하면 위반율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산정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 김규태 LGU+ 상무보

- 저희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드리지는 않았고 그 말씀이시지요? 자율규제 이야기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 것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 보면..., 지금 현재 통신 3사, SKB까지 하면 4사지만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위반율이 다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회사가 56.6%로 가장 높게 나와 있는 것이고, SKT가 34.5%, SKB가 52%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잣대를 동일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사실은 부당하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말씀하신 기준을 적용했을 때 자사의 위반율이 얼마 나오는지 대충 산정해 봤을 것 아닙니까?

○ 김규태 LGU+ 상무보

- 조사하신 샘플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공유하지는 않으니깐요.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이 아니라 일단 조사대상 기간 동안 전 샘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적용한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김규태 LGU+ 상무보

- 저희 내부에서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 그 검토는 해 보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항상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자율규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LGU+나 SKB 같은 경우에는 타사보다 항상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7만원, 9만원 격차를 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9개월 동안 모든 경우를 다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통계가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과 이동전화를 포함하지 않은 결합상품의 위반율 및 초과지급액을 이동통신사별로 봤습니다. 그랬는데 LGU+의 경우에는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위반율이 포함하지 않은 결합상품 위반율보다 더 높고, 그러나 이동전화를 포함한 경우에 초과지급액은 훨씬 더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자꾸 언급을 하시면 SKT의 경우에는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위반율이 포함하지 않은 결합상품 위반율보다 높은 것은 맞는데 그것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포함한 결합상품의 경우에 초과지급액이 포함하지 않은 결합상품의 초과지급액보다 높았습니다. LGU+하고 다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규태 LGU+ 상무보

- 예, 그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논의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피심인 측에서 제출할 것이 있으면 제출하시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아까 쪽 설명하신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더 추가로 내실 것이 있으시면 이번 주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으시면 LGU+ 관계자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견진술인 퇴장)

지금 논의가 됐던 것처럼 이 안건은 좀 더 심도 논의를 위해서 다음 회의에서 사무처의 보고를 받고 또 시정조치(안)도 보고 받아서 최종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도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회계분리의무 위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6-64-243)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라> ‘회계분리의무 위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배중섭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을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회계정리 한 엠비엔미디어랩에 8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한다'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경과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 주요 내용입니다. <나> 사실관계 및 위법성 검토입니다. 2015회계연도 엠비엔미디어랩의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공통의 유무형자산, 광고제작비, 판관비 교통비용을 배부 할당하면서 미디어랩법과 회계정리 기준을 위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엠비엔미디어랩의 경우 기준금액 85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바 '15년 영업보고서 검증에서 회계분리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받은바 있고, '15년 위반 사항 발생 원인이었던 회계처리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이 시정되지 않아 '16년 검증에서도 유사한 위반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기준금액을 감경 없이 그대로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배 국장님, 미디어랩법 제17조(회계정리 등) 이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왜 운영합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애초에는 결합판매 지원고시를 할 때 지원비율을 정하는 것이 직전 연도 5개년 계획 사업자의 영업보고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 이기주 상임위원

- 그것이 미디어랩법상 회계정리 제도의 주된 목적이긴 하지만 이것은 원래 통신 쪽에서 아주 옛날부터 있던 제도인데 그것은 그야말로 내부 보조, 수수료 내지는 요금 관련인데 이것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결합판매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정성인 것 같습니다. 통신에 있어서 요금인하 이런 것이 적정히 산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비용하고 수익이 제대로 분류가 됐느냐, 산정이 됐느냐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다른 광고판매대행사업 외의 사업하고 회계를 분리해서 서로 간 크로스보 보조가 되거나 이런 것이 못 되도록 하는 제도로 저는 이해하는데, 여기 제15조에 또 금지행위 제도가 있습니다. 제15조제1항제5호에 보면 '제17조제1항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새로 오신 방송광고정책과장께 여쭙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미디어랩 재허가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금지행위 위반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사까지 안 가더라도 실태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안건이 미디어랩법 제17조에도 저촉이 되면서 제15조제1항제5호에도 동시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금지행위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는 방송시장조사과이고 지금 광고정책과에서는 회계정리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을 드린 것처럼 미디어렐들이 출범한지 3, 4년 물론 KOBACO는 당연히 별개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 차제에 방송기반국하고 방송정책국하고 협의를 해서 미디어렐들이 금지행위 위반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행위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바로 처음부터 조사로 들어가기 전에 실태점검이라도..., 그러니까 조사하게 되면 그것은 방송정책국에서 해야겠지만 어떤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태점검이라도 하려면 2개 과가 협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안건도 보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장봉진 방송광고정책과장**

- 저희도 확인해 봤더니 지난번 미디어렐 재허가 의견 시에 그런 지적을 하셔서 일단 미디어렐의 영업행태에 대해서는 실태점검이 필요하고 저희도 기반국 내에서는 재허가 시에 그런 업종 심사 부분과 제도개선을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태점검하고 실제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부분을 병행하는 것은 협의를 하던 와중이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했고 저희가 일단 영업행위 미디어렐의 전반적인 실태파악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과거에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거나 아니면 우리 사무처에서 조사나 실태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장봉진 방송광고정책과장**

- '15년도에 저희가 종편미디어렐에 대해서 그런 불공정행위나 그런 영업행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방송정책국에서는 과징금에 대한 처분을 금지행위 위반으로 했던 것이고, 저희 기반국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미디어렐들이 이런 미디어렐법상의 금지행위에 저촉되는 일을 했다라는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방통위가 관장하고 있는 법이 몇 개 있지만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IPTV법 거기에 금지행위가 도입·운영이 되면서 미디어렐법에도 그런 아이디어가 반영됐고 이렇게 제도화가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개 국이 협업해서 이 제도가 돌아갈 수 있게 그런 일들을 앞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마침 이 회계 분리 의무를 위반한 처분을 하는 안건을 올렸기에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방송정책국과 협의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상황을 다 감안한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마. 협찬고지 법규 위반 사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6-64-244~248)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마> ‘협찬고지 법규 위반 사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배중섭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방송법」 및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매일방송, 아시아경제티브이, 케이비에스엔, 매일경제티브이, 와이티엔에 대해 각각 3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하며, 아울러 향후 협찬고지 법규 위반 사업자의 행정처분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기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경과 사항은 생략하고, 네 번째 위반사업자별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매일방송입니다. <나>번 사실관계 및 위법성 검토에서 박스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위반 종류입니다. 매일방송은 시상품 등 협찬고지를 하면서 이를 화면 상단에 고지함으로써 협찬고지 위치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로 기준금액은 700만원이나 최근 3년 내 동일한 종류의 위반 경력이 없으므로 50%를 감경하여 35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시아경제티브이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 사실관계 및 위법성 검토 위반 종류에서 장소 등 협찬고지를 하면서 화면 상단에 고지함으로써 협찬고지 위치 위반에 해당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로 기준금액 700만원이나 50%를 감경하여 350만원을 부과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케이비에스엔의 경우 위반 종류 행사 협찬고지를 하면서 거래 정보와 사진을 노출함으로써 협찬고지 내용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로 기준금액 700만원이나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 내 동일한 종류의 위반 경력이 없어 50%를 감경하였습니다. 매일경제티브이입니다. 제작협찬 고지를 하면서 상품 사진을 노출하여 협찬고지 내용을 위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로 역시 기준금액 700만원이나 동일한 사유로 50%를 감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와이티엔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작 협찬고지를 하면서 화면 상단에 고지하여 협찬고지 위치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로 기준금액 700만원이나 동일한 사유로 50%를 감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앞으로 협찬고지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반복적 안건으로 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방송광고 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송사들이 광고에 모든 것을 다 걸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파이는 적어져서 협찬이라고 하는 이런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탈법 또 편법이 계속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적발이 안 돼서 그렇지, 이번에도 모니터 요원이 제대로 만들어지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불시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비밀비재할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서 해서 이런 처벌이 없다면 아마 이런 탈법·편법 협찬고지 위반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광고주 입장, 스폰서 입장에서는 그럴 것입니다. 어떻게든 협찬을 했지만 자기들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넣어주고 이런 것을 바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고지를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이것이 광고와의 구분도 없어지고 그리고 자칫 방송광고 시장이 왜곡됩니다. 이것을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마침 우리 모니터 요원들이 확충되어서 모니터 링이 됐는데 저는 아주 가장 과한 그런 패널티를 줘서 앞으로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늦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서 방송광고시장의 왜곡현상을 지키는 그런 파수꾼이 되어주기를 당부합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방송광고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처리지침에 따라서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하는 것이 필수적 감경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필수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지침상에 그것을 횡수로 정해 놓았습니다. 1차 경우에는 50%….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니까 50%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50% 감경'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여기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협찬고지 규칙 위반이 있는데 경중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협찬고지 규칙이 어느 부분을 위반했는지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단순히 위치위반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광고효과를 과하게 줘서 위반한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 장봉진 방송광고정책과장

- 예.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위원장님, 지금도 여기 지침상에 있는 위반 횟수, 위반 정도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감경한다고 되어 있지만 시행령상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서 다시 재량행위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그것이 너무 재량으로 되어 있으면 곤란하니까 규정을...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말씀하신 그런 것을 지침에 어느 정도 녹아낼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배중섭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유입니다. 현행 국민관심행사 고시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해석상 분쟁소지가 있어 국민설문조사 결과와 과거 시청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국민관심행사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사항 중에서 국민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쳤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국민관심행사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아시아경기대회를 동·하계로 구분하여 동·하계 모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IFA 월드컵의 경우에는 FIFA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로 한정하였으며, 야구 WBC의 경우에도 국가대표 출전경기로 한정하였습니다. 축구A 매치의 경기는 성인남자 경기로 한정하되 AFC와 EAFF가 주관하는 경기와 평가전으로 세부경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재검토 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국민적 관심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매 3년마다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시 개정안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행정예고를 거쳐서 12월 중에 위원회에 의결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박 과장님, '국민관심행사 등의 구체화' 이것은 잘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도 했다는데 제가 평균적 국민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체감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그리고 여기 보면 축구A매치 중에 동아시아축구연맹이 주관하는 경기는 왠지 국민의 관심도나 시청률이 떨어질 것 같고 상대적으로 축구 같은 경우 유럽축구나 코파아메리카 그런 것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동주 방송기반총괄과장

- 원래 사업자 의견수렴 할 때는 동계아시안게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동계아시안게임 자체가 관심이 낮지 않느냐?'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 중의 하나가 동계아시안게임이 2011년 열리고 나서 내년 2017년 2월에 열립니다.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것이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열리는 것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져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심도를 조사해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도가 하계와 동계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계가 관심 있냐, 동계가 관심 있냐 이렇게 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심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동계가 조금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진짜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지상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 박동주 방송기반총괄과장

- 맞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PP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 박동주 방송기반총괄과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법을….

○ 최성준 위원장

- PP는….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왜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느냐 하면 아까 시청률을 이야기하고 국민의 관심사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요사이 스포츠 채널에서 중계권을 확보해서 중계해 주는 행사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유럽축구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 박동주 방송기반총괄과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어느 것이 더 국민의 관심도나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나타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약간 엉뚱하게도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늘 저희가 장시간 회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저를 이렇게 짓누르는 것이 우리 제도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늘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보편적 시청권 제도도, 제가 엉뚱한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국민들이 스포츠 전문채널을 통해서 많이 보고 관심 있어 하고 시청률이 높은 이런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중계권은 앞으로 반영이 될 여지가 없는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인데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는데 표정을 보니까 위원장님도 약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동주 방송기반총괄과장

- 저희들이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2009년, 2007년 이럴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반영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환경이 워낙 변해 있는 환경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 전반에 대해서 한번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어떻게 적절하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볼 계획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우리가 보편적 서비스라는 말이 오래 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통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 방송법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저는 왠지 올드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도 살아있는 제도로 하려면 현재 시장 상황이나 환경을 반영하는 그런 제도로 발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부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이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죄송합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이것을 만든 취지를 부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 **고삼석 상임위원**

- 길어지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드한 것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 지금 근본적인 검토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약간의 변화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맡고 있는데 가장 최근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상이 되는 국민관심행사나 이런 것들이 제약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상업화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이 애초의 출범은 아마추어리즘, 비상업적인 관점에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최근에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심 있는 경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상업적인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IOC나 FIFA 같은 국제기구가 아니라 특정 기구나 기업이 주관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배제하다 보니까 트렌드를 못 쫓아간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시 개정안 마련을 위해서 국민설문조사도 했고 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의견을 들었는데 큰 논란 없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박동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말·연초로 가게 되면 보편적시청권보장 제도와 관련 금지행위까지 해서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기주 위원님 관심 갖고 있는 행사 나중에 한번 꼭 포함시켜 주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리고 동아시아축구연맹이 하는 축구 있지요? 국가대표 한·일·중 경기이기 때문에 엄청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있어야 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사례가 없어서 그렇지 지금 조문을 보면 예를 들어서 PP가 중계방송권을 만약에 가졌다고 하면 거기에 보편적 시청권이 적용되는 것은 여전히 같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아니라고 하셔서 제가 잘못 말을 했는가 싶어서 그다음부터 주눅이 들어서 제가….

○ **최성준 위원장**

- 처음에 그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어색했는데 그런 사례가 없어서 그렇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JTBC가 중계권을 얻은 것이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PP가 이렇게 한 것이.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하여간 회의를 할 때마다 항상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검토해야 할 내용들이 자꾸 생겨서. 그렇지만 이것이 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방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고시개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의가 있으신 것은 아니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접수하겠습니다.

나.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나> ‘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배중섭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보고하겠습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보고하겠습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서 개정내용입니다.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한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의견 말씀하시기 전에 <보고안건 다>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다>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배중섭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같은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 2건 보고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면 이 2건 모두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최근 현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지나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한 주 늦어지는데 제가 최근의 현안 관련해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젯밤 TV조선은 김영환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을 근거로 청와대가 언론통제를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신문에서 방송까지, 방송은 종편PP에서 공영방송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광범위하게 통제를 한 흔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비서실장께서 “비판 언론에 대해 불이익이 가도록 철저하게 대응하라, 본때를 보여야 한다,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 때는 “성향을 확인하라”는 지시와 더불어 종편PP에 대해 종편의 역할을 계획하고 통제하겠다는 취지의 지시내용도 있었습니다. 비망록을 보면 지난 1월 대통령에 비판적인 종편PP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치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고 출연자에 대해서 제재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해당 프로그램이 폐지되기에 이릅니다. 실로 충격적인 내용인데 방심위는 물론 방통위 또한 청와대의 방송통제를 방치하거나 법정제재 등을 통해 부지불식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촛불집회 현장에서 공영방송인 KBS, MBC의 기자들이 시민들로부터 쫓겨나거나 욕설을 듣는 등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경영진과 구성원들이 언론학에서 말하는 감시견으로서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공적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다면 현재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것인가라는 늦은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공영방송의 이사장은 경영진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 감별사로 활동하고 또 다른 공영방송사 이사 1명은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일반 시민에 대해서까지 중복 딱지를 붙이는 등 국민 통합의 역할 대신 국민 분열과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공영방송 이사의 성향을 확인한 그것의 잘못된 결과는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실태는 공영방송사를 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반성으로 이어집니다.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제도개선을 적시에 했다면 최악의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해 봅니다. 더 늦기 전에 방송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공영방송의 공적책임과 공공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별도의 안건으로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도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11월 22일 화요일 오후 4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6년 제6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8시 00분 폐회 】